

#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조세비용의 관점에서 본 재정개혁 / 전주성
연안분석	6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 홍범교
	30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 기본보조금에 대한 검토 / 김현숙
최신 조세·개정 해외동향	56	인도네시아 정부, 4대 중점산업 재생에 특별 감세안 추진 외
정책흐름	69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78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새명칭 공모
	82	전국 871만호에 대한 2006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92	2006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이런 의견 저런 생각	97	오도된 상속세 폐지론 외

## 조세비용의 관점에서 본 재정개혁

전주성 / 이화여대 교수,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

조세와 관련된 정책 논의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가 세금부과에 따른 비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저 시민들의 소득, 소비, 재산에다 세금을 매기면 세수는 세율에 비례해 저절로 걷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사유재산의 정부이전을 의미하는 세금에는 경제적,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 즉, 1원의 세금을 정부가 거둘 때 실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세도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용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익이 이 총비용을 능가해야만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다. 또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납세자가 충분히 납득하지 않으면 정치적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에 따른 비용은 효율 비용, 행정 비용, 납세자순응(조세회피) 비용 그리고 정치적 비용(조세저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행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납세자의 반응과 연관된 것이다. 조세저항이나 조세회피는 납세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반면 효율비용은 세금으로 인해 경제주체가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정부가 세금을 걷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비효율 또는 초과부담(excess burden or deadweight loss)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액세(lump-sum tax)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는 이러한 왜곡비용을 수반한다. 예컨대 근로소득에 과세



를 하면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소비세의 경우는 재화의 상대가격을 바꾸어 소비바구니의 구성을 변화시킨다. 자산에 대한 과세 역시 상대적 수익률과 위험도에 영향을 주고 이는 적정 포트폴리오의 변화로 이어진다. 효율비용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제행위의 탄력성, 조세구조, 그리고 기존 자원배분의 적정성에 의존한다. 만일 사람들이 여가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면 조금만 세금을 높여도 일을 덜할 것이다. 수요나 공급탄력성이 매우 높은 재화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금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안 사거나 안 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정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자원배분은 특별한 시장실패의 사례가 없는 한 효율적이라는 것이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이다. 이 경우 경제주체의 행동을 바꾸는 왜곡적인 조세는 적정 자원배분을 벗어나게 만들므로 효율비용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효율비용은 세율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세수를 거두더라도 “큰 세금 하나보다 작은 세금 여럿이 낫다”라는 추론이 나온다. 자연 과세베이스가 협소한 것보다는 골고루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좋다는 정책시사점이 뒤따른다. 서구 제국들이 1980년대에 높은 한계세율의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정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자원배분은 특별한 시장실패의 사례가 없는 한 효율적이라는 것이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이다. 이 경우 경제주체의 행동을 바꾸는 왜곡적인 조세는 적정 자원배분을 벗어나게 만들므로 효율비용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부작용을 피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세제개혁을 추구한 것도, 재정적자를 피한다고 경기순환에 따라 세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사회적 비효율을 증가시킨다는 가설(tax smoothing hypothesis)도 모두 이런 이론적 배경을 지닌다.

서구 국가들의 경험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정부론’이 많은 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때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지나쳐 “조세 부담은 낮을수록 좋다”라는 비논리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무엇이 적정 조세부담이나 재정규모인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첫째, 설사 어느 정도 추가적 비용(효율비용이나 행정비용)이 따르더라도 정부서비스의 편익이 워낙 크다면 세금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 서구제국들을 보면 미국과 같이 조세부담률이 낮은 경우도 있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세부담이 높은 나라들도 있다. 정부가 일 잘하고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재정규모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들도 특정 세목의 세율이 특별히 높다기보다는 넓은 과세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세금에 따른 비효율은 최소화하며 동시에 정부지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납세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길이다.

둘째, 만일 교과서적 가정과 달리 시장실패나 조세왜곡의 결과로 기존의 자원배분이 매우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왜곡적인 조세(즉,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조세)

가 오히려 사회적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공해와 같이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거나 더 적게 공급된다. 이 경우 조세는 경제주체의 행동을 바꾸어 사회적 비효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소주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맥주에 세금을 새롭게 매기면 맥주시장에는 새로운 비효율이 창출될 것이다. 그런데 맥주를 마시던 사람들이 소주를 먹게 되면 소주 생산량은 늘어나 소주세로 인한 비효율은 줄게 된다. 이 두 효과를 합해 사회적 효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 개도국의 경우 조세지원을 통한 왜곡이 심하지만 성장에 필요한 자본이나 기술축적이 지나치게 모자란다면 조세가 이런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소득분배의 적정 수준은 정치적 합의의 문제이므로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공평한 분배에 높은 비중을 둔다면 복지재원을 감당할 세금 부담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에 이른다는 보장은 없다. 일반적으로 단기적 예산제약하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trade-off)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외부효과의 치유나 인적자본 형성에 초점을 둔 적절한 재분배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분배가 악화되면 중하류 계층의 복지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기영합적 분배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사회안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아직도 만연한 우리 상황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베이스가 협소하고 조세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말 장기적 안목에서 필요한 지출이라면 단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인기가 없더라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는 정책능력과 정치적 의지를 담보로 하는 얘기다.

요컨대 요즘 우리나라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나 조세개혁에 관한 논의는 좀더 이론적 배경, 제도적 환경 그리고 역사적 경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불명예스럽게 퇴출된 왕이나 정권을 보면 잘못된 조세정책이 화근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세금에 대한 유혹을 버리기 힘든 것 같다. 이는 세금을 거두어 쓸 생각만 하지 이것이 초래하는 비용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군대나 치안이 약하면 언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사라질지 모른다. 따라서 처음 얼마간은 세금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크게 능가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규모에 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수록 주어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조세부담과 재정규모가 커지더라도 정부서비스가 워낙 좋다면 세금에 따른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베이스가 좁고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환경 하에서는 효율비용과 조세저항이 클 가능성이 높다. 큰 정부, 복지 국가를 추구했던 나라들조차도 높은 한계세율의 부작용과 자본의 국제이동에 따른 압박에는 두 손을 들었다. 복지국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재원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같은 세금을 거두더라도 어떤 조세제도를 통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정치적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개혁의 우선순위가 도출된다.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아직도 만연한 우리 상황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베이스가 협소하고 조세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지출구조의 비효율로 인해 세금 한 단위당 정부서비스의 질이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재정 규모를 좀더 늘릴 유인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래 봤자 편익보다 비용만 초래할 위험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우리 실정에 맞는 조세제도와 예산제도를 고안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려면 우선 학자들부터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 단순한 국제비교나 수입 교과서 논리로 우리가 직면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재정학자들이 큰 정부니 작은 정부니, 증세니 감세니 하는 유치한 싸움판에 몰이꾼 노릇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KIP

# 현안분석



##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홍 범 교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

기본보조금에 대한 검토

김 현 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홍 범 교 선임연구위원(hong@kipf.re.kr)

### I. 머리말

1996년에 우리나라에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었으니, 우리나라에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개설된 지 벌써 만 10년이 지났다. 선물시장을 처음 개설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선물 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 상장된 주가지수 옵션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다고 하겠다. 이러한 성공의 배후에는 정책당국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정책도 한 몫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시장의 성공을 위하여 과세당국은 소득세나 거래세의 어느 것도 과세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시장을 평가하자면, 비록 일부 새롭게 상장된 상품의 경우 거래량이 미미한 경우도 있으나, 일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증진되어 그 거래가 주식거래와 같이 일상화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거래량은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1〉 및 〈표 2〉 참조). 따라서 시장 개설 초기에 유치 산업론적인 우려에 입각하여 유지되어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2004년 말에는 정부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의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아직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 등으로 부결된 바 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 개설 초기에 유치산업론적인 우려에 입각하여 유지되어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거래량은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 주가지수선물 상품 순위

(단위: 만계약)

순위	거 래 소	국 가	상 품 명	'04년	'03년(순위)	전년대비
1	CME	미국	E-Mini S&P 500	16,720	16,118 (1)	4%
2	EUREX, Frankfurt	독일	DJ Euro STOXX 50	12,166	11,604 (2)	5%
3	CME	미국	E-Mini NASDAQ100	7,717	6,789 (3)	14%
4	KRX	한국	KOSPI 200	5,561	6,220 (4)	-11%
5	EUREX, Frankfurt	독일	DAX	2,923	2,718 (6)	8%
6	EURONEXT-Paris	프랑스	CAC 40 10 Euro	2,406	2,932 (5)	-18%
7	National Stock Ex	인도	S&P CNX Nifty	2,335	2,056(12)	121%
8	EURONEXT-Liffe, UK	영국	FT-SE 100	2,077	2,025 (7)	3%
9	CBOT	미국	Mini(5\$) DJ Industrial	2,069	1,086(11)	91%
10	CME	미국	E-Mini Russell 2000	1,712	388(28)	341%

자료: 한국증권선물거래소(2005. 4)

〈표 2〉 주가지수옵션 상품 순위

(단위: 만계약)

순위	거 래 소	국 가	상 품 명	'04년	'03년(순위)	전년대비
1	KRX	한국	KOSPI 200 Options	252,156	283,772 (1)	-11%
2	EUREX	독일	DJ Euro STOXX 50	7,141	6,179 (3)	16%
3	EURONEXT-Paris	프랑스	CAC 40 Options	6,315	7,367 (2)	-14%
4	CBOE	미국	Exchange Traded Funds	5,126	4,115 (5)	25%
5	CBOE	미국	S&P 500 Index Options(SPX)	4,947	3,675 (6)	35%
7	TAIFEX	대만	TAIEX Options	4,382	2,172 (8)	102%
8	EUREX	독일	DAX Options	4,218	4,152 (4)	2%
8	TASE	이스라엘	TA-25 Index Options	3,692	2,935 (7)	26%
9	EURONEXT-Liffe, UK	영국	FT-SE 100 Options(ESX)	1,787	1,462(10)	22%
10	CBOE	미국	AEX Options	1,710	1,412(12)	21%

자료: 한국증권선물거래소(2005. 4)

이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이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접근방법으로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가장 정치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미국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가장 먼저 발달하였고,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여 왔으며, 현물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미국은 세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과세당국은 파생금융상품의 속성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검토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개방된 금융시장과 제도하에서 상품의 속성은 지역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미국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담은 세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풍부한 판례를 통해서도 동 분야에 대한 미국 제도의 깊이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도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다. 파생금융상품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며, 파생금융상품의 도입 초기에 동 상품의 정의라든가 회계준칙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하다보니, 차후에 서로 모순되는 규정이나 허점이 발견되고, 이러한 모순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에서 짜깁기식의 법률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미국 제도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우리나라와의 제도적인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우선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포괄주의 소득세제를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는 열거주의 방식의 소득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의 소득 성격구분, 즉 자본이득과 경상소득의 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만큼 중요하지 않다. 반면에 현물시장과 파생금융상품 시장 간의 연계 과세의 필요성은 미국의 포괄주의에서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열거주의 방식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미국 제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포괄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고, 장기자본이익에 대한 우대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득의 종류를 자본이득과 경상소득으로 나누고, 장기소득과 단기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II.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논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포괄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고, 장기자본이익에 대한 우대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득의 종류를 자본이득과 경상소득으로 나누고, 장기소득과 단기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장기자본이득세율은 경상소득에 대한 한계세율 15% 구간 이하의 투자자들에게는 5%,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에는 15%로서 최고세율은 15%이다. 따라서 장기와 단기 자본이득세율은 20%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sup>1)</sup>.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상품의 구조와 거래 방식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방대한 분량의 세법과 관계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인 명목원금계약, 선물, 선도, 옵션 계약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한 <표 3>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례규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sup>2)</sup>.

### 1. 명목원금계약<sup>3)</sup>

명목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이란 어떤 명목적 원금을 상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파생되는 지불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sup>4)</sup>, 스왑이 대표적인 상품이며, 캡(caps), 플로어(floors) 등이 이에 포함된다<sup>5)</sup>.

1) 단기자본이득은 경상소득으로 취급되며, 최고 한계세율은 35%이다.

2) 본고에서 미국 제도와 관련된 설명은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Anson(1999)과 Conlon & Aquilino(1999)을 주로 참조하였다. 1999년 이후의 세법 개정상의 변화와 원전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직접 U.S. Code와 Code of Federal Regulation 등을 통하여 여기에 반영하였다.

3) 이하 각 상품별 설명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수록하지 못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홍범교(2005)를 참고하기 바란다.

4) Treasury Regulation §1.446-3

〈표 3〉 미국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요

		소득인식시기	소득의 성격
명목원금계약		- 정기적 지불은 회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인식 - 종료지불은 지불이 일어나는 당해 연도에 인식(수취자 입장에서는 비정기적 지불로 취급) - 비정기적 지불은 상각방식 사용	- 정기적 지불은 경상소득 - 종료지불은 자본손실(정기적 지불의 마지막 회분으로 분류 되면 경상소득, 수취자 입장에서도 경상소득) - 비정기적 지불은 경상소득
선 물		- 시가평가(결제 후 재조정) - 헤지거래는 시가평가하지 않음.	- 자본이득으로 취급 - 40%는 단기자본이득, 60%는 장기자본이득으로 간주 - 헤지거래의 경우는 경상손익
선 도		- 결제시 인식	-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나, 대부분 자본이득 - 투자기간에 따라 장단기 결정
옵션	§1256옵션	- 시가평가	- 자본손익 - 40/60 규정 적용
	주식옵션	- 결제 또는 행사시 인식 - 주식의 자본손익계산에 옵션 프리미엄 가감	- 자본손익 - 투자기간에 따라 장단기 구분
	§1234A옵션	- 결제 또는 행사시 인식 - 기초자산의 손익계산에 옵션 프리미엄 가감	- 기초자산에 따라나, 대부분 자본손익 - 투자기간에 따라 장단기 구분

미국에서는 명목원금계약 지불의 성격을 일단 이자나 배당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sup>6)</sup>, 과세 목적상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한다: 정기적 지불(periodic payment), 비정기적 지불(non-periodic payment), 종료 지불(termination payment)<sup>7)</sup>. 정기적 지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불을 뜻하며, 종료 지불은 계약을 끝내기 위한 지불 또는 남아있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넘기는 지불을 말한다. 명목원금계약에 대한 정기적 지불이나 종료 지불이 아닌 것은 모두 비정기적 지불로 정의된다. 캡이나 플로어에 대한 프리미엄, 불균형 스왑<sup>8)</sup>에 대한 지불, 제3자에게 지불하는 양도 수수료, 스왑 계약의 한쪽 당사자에 의한 선지불(prepayment), 스왑선<sup>9)</sup>의 프리미엄 등을 비정기적 지불의 예로 들 수 있다<sup>10)</sup>.

5) 캡은 어떤 계약의 기준이 되는 가격변수가 특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계약이며, 플로어는 반대로 동 가격변수가 특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계약이다.

6) Conlon & Aquilino(1999) p.B1-54 참조.

7) 각각 Treasury Regulation §1.446-3(e), §1.446-3(f), §1.446-3(h)에서 정의하고 있다.

8) 불균형 스왑(off-market swap)이란 순지급의 현재가치가 \$0이 아닌 스왑 계약을 말한다.

9) 스왑선(swaption)은 이자율 스왑에 대한 옵션을 말한다.

10) Treasury Regulation §1.446-3(f)(1)

선물은 대표적인 장내 상품으로서 일일 정산가격이 공개되기 때문에 시가평가가 이루어진다. 시가평가란 특정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과세연도 말에 동 상품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 표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정기적 지불과 비정기적 지불은 일반적으로 경상손익으로 취급되며, 소득을 회계 기간별로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종료 지불의 경우에도 원래는 경상손익으로 취급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불이 자본손익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인 자본재의 판매나 교환(sale or exchange)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11)</sup>.

그러나 자본손익에 대한 이러한 제한적인 정의는 납세자들이 판매나 교환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여 거래를 종료시킴으로써 손익의 성격을 경상손익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세제상의 유리한 취급을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에서는 §1234A의 제정을 통하여 판매나 교환이 아닌 반대거래, 소멸, 만료 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자본재의 종료거래에 의한 손익은 자본손익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sup>12)</sup>. 따라서 §1234A에 의하여 명목원금계약의 종료지불은 자본손익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그러나 종료지불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불의 마지막 회분이라고 해석되면 정기적 지불로 분류되어 경상손익으로 취급된다<sup>13)</sup>.

## 2. 선물

선물은 대표적인 장내 상품으로서 일일 정산가격이 공개되기 때문에 시가평가가 이루어진다. 시가평가란 특정 파생금융상품의 경우<sup>14)</sup>, 과세연도 말에 동 상품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동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1) Conlon & Aquilino(1999) p.B1-55 참조.

12) IRC §1234A의 명칭은 "Gains or losses from certain terminations"이며, 계약 종료 방식이 반대거래(cancellation), 소멸(lapse), 만료(expiration) 및 기타 종료(other termination) 등을 거치더라도 자본 손익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3) ibid, p.B1-56 참조.

14)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을 '§1256 계약'이라고 부른다. 장내 선물 계약(regulated futures contract), 통화계약(foreign currency contract), 비주식 옵션(non-equity option), 딜러 주식 옵션(dealer equity option), 딜러 증권선물계약(dealer securities futures contract)이 여기에 해당된다.

- (i) §1256 계약들은 실제 처분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연도 말에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 손익을 계상한다<sup>15)</sup>.
- (ii) 실제로 §1256 계약이 처분된 과세연도에는 그 이전 과세연도의 시가평가에 따른 불일치를 조정한다<sup>16)</sup>.
- (iii) 시가평가에 따른 손익은 40%는 단기자본손익으로 60%는 장기자본손익으로 처리한다(40/60 규정)<sup>17)</sup>.

선물 손익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손익을 결정짓는 것이 자산가치의 변동인 만큼 자본손익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sup>18)</sup>.

§1256 적용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헤지거래이다<sup>19)</sup>. 헤지거래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거래가 헤지거래임을 계약이 체결된 당일내에 명확하게 선언하여야 한다<sup>20)</sup>. 이것은 납세자가 보다 유리한 세제상 취급을 받기 위하여 소급하여 계약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헤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취급한다<sup>21)</sup>. 헤지거래의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헤지를 영업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손실 공제의 경우,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취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물의 경우에도 헤지거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40/60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sup>22)</sup>, 소득의 성격도 경상소득으로 취급한다<sup>23)</sup>.

### 3. 선도

선도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시에는 아무런 세제상의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sup>24)</sup>. 결제시에 과세소득이 인식되며, 대부분 자본이득으로 취급된다<sup>25)</sup>. 최초 계약 시점과 결제 시점간의

15) IRC §1256(a)(1)

16) IRC §1256(a)(2)

17) IRC §1256(a)(3)(A)-(B): 선물은 증거금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익의 인출이 가능하며, 이론적으로 만기만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을 정하기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일괄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장 단기 자본이득을 구분한다.

18) IRC §1256(f)(3)(A)

19) IRC §1256(e)

20) IRC §1256(e)(2)

21) IRC §1256(f)(1) & §1256(f)(3)(B)

22) IRC §1256(f)(2)

23) IRC §1256(f)(1)

24) Conlon & Aquilino(1999) p.B1-7 참조

25) ibid p.B1-9 참조

헤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취급한다. 헤지거래의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헤지를 영업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손실 공제의 경우,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취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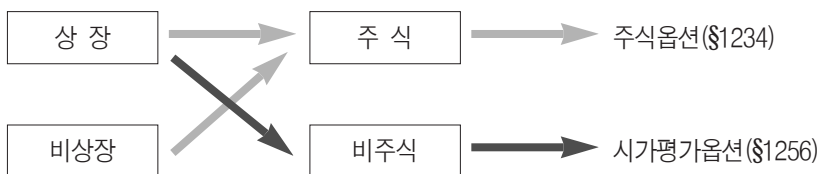
투자기간에 따라 장단기 여부가 결정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언급할 것은 선도계약의 기초자산에 대한 인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즉 반대거래나 상계 계약(offsetting contract)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연방소득세법 상 ‘판매나 교환(sale or exchange)’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본손익으로 취급될 수 없다<sup>26)</sup>. 그러나 §1234A의 제정에 의하여 판매나 교환이 아니더라도 선도거래의 결과를 자본손익으로 취급하는데, 그 이유는 앞의 명목원금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다른 종료 방식에 의하여 자본손실을 경상손실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4. 옵션

과세 목적상 옵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크게 i) 상장 옵션이나, 비상장 옵션이나 하는 기준과 ii) 주식(equity)을 대상으로 하느냐, 비주식(non-equity)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두 개의 기준이 사용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크게 보아 상장 옵션이면서 비주식을 대상으로 할 경우 §1256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1234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림 1] 옵션의 구분



26) IRC §1001(c)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거래량이 많은 일반적인 주가지수에 대한 옵션은 주식옵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 증권거래법(SEC Securities Exchange Act §3(a)(55))에서 정의하고 있는 좁은 범위(narrow-based)의 주가지수<sup>27)</sup> 옵션만이 주식 옵션에 속하고,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가지수 옵션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sup>28)</sup>. 따라서 예를 들어 S&P 500 선물 옵션은 비주식 옵션에 해당한다.

### 가. § 1256 옵션

§1256 옵션이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옵션을 지칭하는바, 선물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상장되어 있는 비주식 옵션이 대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1256 옵션은 선물옵션(options on futures)으로서, 선물과 마찬가지로 40/60 규정이 적용된다. 거래 손익은 자본손익으로 취급된다.

만일 옵션을 매입하여 행사하지 않고 그냥 만료시키는 경우, 옵션 보유자는 자본 손실을 입게 된다. 반면 옵션 매도자의 경우는 자본 이익을 보게 된다. 두 경우 모두 40/60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콜선물옵션을 구입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선물계약을 구매하게 되면 동 선물계약의 구매 가격이 옵션 프리미엄만큼 증가하게 된다. 만일 투자자가 풋옵션을 구매하여 행사한 경우라면, 선물계약의 매도로부터 얻은 수익에서 옵션 프리미엄만큼을 제한 것이 순수익이 될 것이다.

### 나. 주식 옵션(equity option)

주식에 대한 옵션은 §1256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256 옵션은 선물옵션(options on future)으로서 기초 자산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과 같이 시가평가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주식 옵션은 기초 자산이 주식으로서 주식의 회계 및 과세처리의 영향을 받는다.

주식옵션을 매입할 때 자본 이익이나 손실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며, 당장 공제 가능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주식옵션 매입에 지급되는 프리미엄은 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이연 계정에서 자본비용으로 처리된다. 주식 옵션의 프리미엄 자체는 자본손익에 직접 영향

27) 좁은 범위의 주가지수는 예를 들어, 9개 이하의 주식으로 이루어진 지수, 최대 주식의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상위 5개 주식의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식의 수가 대단히 적거나, 일부 주식에 의한 심한 편중이 있는 지수를 의미한다.

28) IRC §1256(g)(6)(B)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특례규정들은 상품별로 규정된 일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주로 이러한 일반규정들이 갖는 과세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들이다.

을 미친다기보다, 기초 자산의 취득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본손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다시 파는 경우, 매도가와 매입가의 차이가 자본 손익이 되며, 장단기 여부는 투자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풋옵션의 경우에도 행사되지 않고 만료, 판매되는 경우,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이만큼 자본 손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다. § 1234A 옵션

끝으로 §1234A 옵션은 §1256이나 주식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옵션을 모두 포함하는데,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이나 개인자산에 대한 옵션 등을 포함한다. 세법상으로 동 옵션에 대한 과세는 주식옵션에 대한 과세와 유사하다.

### 5. 특례규정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특례규정 (special rules) 들은 상품별로 규정된 일반규정 (general rules)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주로 이러한 일반규정들이 갖는 과세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들이다.

#### 가. 헤지거래 관련 규정들 (§ 1221 외)

헤지거래는 파생상품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류의 하나이며, §1221<sup>29)</sup>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들은 여러 다른 조문에도 걸쳐 있다. §1221 (b) (2) (A)에서 정의되고 있는 헤지거래는 납세자의 일상적인 거래 또는 사업과정에서 체결하는 거래로서 주로

29) IRC §1221의 정식 명칭은 "Capital asset defined"이다.

일반 자산과 관련된 가격변동이나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래<sup>30)</sup>, 대출이나 경상 채무에 관련된 이자율, 가격,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래를 의미한다<sup>31)</sup>.

헤지 관련 규정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헤지거래에서 발행하는 손익을 자본손익이 아니라 경상손익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즉 헤지거래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취급되고, 헤지의 대상거래와 통합하여 하나의 거래로 취급된다.

헤지거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헤지거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납세자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손익과 경상손익간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 쪽의 거래 손익은 자본손익으로, 이와 연관된 다른 한 쪽 거래의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된다면 그 손실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스트래들 규정이나 위장매매 규정 등과 같은 대부분의 특례규정이 남용방지를 위한 규정인 데 비하여, 헤지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는 특색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 당국과 납세자간의 시각 차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헤지거래는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종류별 적격 조건을 만족시켜야 헤지거래로 과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받는다<sup>32)</sup>.

- 비즈니스 헤징(Business hedging)
- 연결 비즈니스 헤징(Consolidated business hedging)
- 통합 채무 헤징(Integration of hedges of debt instruments)
- 면세 채권 헤징(Tax-exempt bond hedging)
- 통화 헤징(Foreign currency hedging)

헤지거래로 인정받으면 동 거래의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취급하고, 헤지의 대상거래와 통합하여 하나의 거래로 취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위의 다섯 가지 거래가 마찬가지이다.

#### 나. 위장매매 규정

위장매매(wash sales) 규정(§1091)<sup>33)</sup>은 납세자가 주식이나 증권을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면서 매도일 전후로 30일 이내에 매도자산과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주식이나 증권을

30) IRC §1221(b)(2)(A)(i)

31) IRC §1221(b)(2)(A)(ii)

32) 각 헤지 거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Conlon & Aquilino(1999), pp. B3-32~B3-82 참조하기 바란다.

33) 정식 명칭은 "Loss from wash sales of stock or securities"이다.

스트래들 규정이나 위장매매 규정 등과 같은 대부분의 특례규정이 남용방지를 위한 규정인 데 비하여, 헤지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는 특색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 당국과 납세자간의 시각 차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다.

매입하는 경우, 손실 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다.

위장매매를 통하여 거래를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산으로 커버하면서 손실 공제를 통하여 조세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도한 자산의 손실을 이연하여 새로 취득한 자산의 손익과 함께 계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동 규정의 대상은 주식과 증권이며, 여기서 말하는 증권에는 동 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옵션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포함한다<sup>34)</sup>. 또한 새로 취득한 주식이나 증권이 매도한 주식이나 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substantially identical)” 자산인가 하는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파생상품들의 조합을 통하여 동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다. 동 규정은 주식이나 증권의 딜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 과정에서 생긴 손실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한다.

#### 다. 스트래들 규정

§1092와 §263(g)는 스트래들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다<sup>35)</sup>. 스트래들은 구체적으로 개인 자산<sup>36)</sup>에 대한 상계 포지션(offsetting position)으로 정의된다<sup>37)</sup>. 상계 포지션이란 어떤 자산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특정 포지션에 대하여, 동일 자산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동 자산에 대한 손실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포지션을 의미한다<sup>38)</sup>.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효과적인 헤지 전략은 그 자산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한, 스트래

34) IRC §1091(a)

35) 각각 정식 명칭은 “Straddles”와 “Capital expenditures (g)Certain interest and carrying costs in the case of straddles”이다.

36) IRC §1092(d)(3)(A)에 의하여 개인 자산에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IRC §1092(d)(3)(B)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옵션, 선물, 기타 유사한 포지션은 개인 자산에 포함된다.

37) IRC §1092(c)(1)

38) IRC §1092(c)(2)(A)

들을 구성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러한 의미에서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스트래들의 한 포지션을 구성하는 자산이 스트래들을 구성하기 이전에 이미 장기투자의 기간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즉 이미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스트래들 포지션의 투자기간은 그를 구성하는 한 포지션이 처분되는 때부터 시작된다<sup>39)</sup>. 이러한 규정은 단기자본이득을 장기자본이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스트래들의 손실은 그러한 손실이 상계 포지션에서의 미실현 이익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sup>40)</sup>. 인정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연된다<sup>41)</sup>. 다시 말하면 실현된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계 포지션의 미실현 이익보다 큰 부분만 공제가 허용되고, 나머지는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다음 연도로 이연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스트래들 규정은 결국 납세자가 자본이득을 상쇄하기 위하여 헤지 포지션을 이용하여 조세목적상 인위적인 자본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악용방지 규정의 하나이다.

아울러 §263(g)에서는 납세자가 스트래들에 있어서 ‘이자와 재고비용(carrying charges)’을 공제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들은 자본 비용화(capitalization)되어 손익이 인식될 때 자본손익의 크기에 영향을 줄지언정, 경상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는 없다.

스트래들의 상계 포지션 가운데 하나가 §1256 계약인 경우를 혼합 스트래들(mixed straddle)이라고 한다. 혼합 스트래들의 경우, 모든 포지션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개가 §1256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모든 포지션에 대하여 스트래들 규정이 적용된다<sup>42)</sup>. 그러나 모든 포지션이 §1256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트래들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라. 공매도 규정

공매도 규정(§1233)<sup>43)</sup>은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언제 종결하는가에 따라 단기자본이득을 장기자본이득으로 전환하거나, 장기자본손실을 단기자본손실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단기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substantially identical property)’을 일년 이하로 보유한 경우에도 이를 공매도를 통하여 장기자본이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39) Treasury Regulation §1.1092(b)-2T(a)(1)

40) IRC §1092(a)(1)(A)

41) IRC §1092(a)(1)(B)

42) IRC §1256(d)에서 납세자가 혼합 스트래들의 경우, 시가평가의 적용면제를 선택할 수 있다.

43) 정식 명칭은 "Gains and losses from short sales"이다.

공매도의 손익은 최초 계약 시점이 아니라 종료 시점에 인식되는데, 공매도 규정의 또 하나의 핵심은 § 1233(a)에서 보듯이 공매도의 종료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손익이라는 것이다. 동 규정은 주식과 증권, 상품선물을 대상으로 한다.

§1233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소득의 장단기 성격을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의 장기 보유를 공매도를 통하여 일년 이하의 단기자본손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도 방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매도의 손익은 최초 계약 시점이 아니라 종료 시점에 인식되는데, 공매도 규정의 또 하나의 핵심은 §1233(a)에서 보듯이 공매도의 종료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손익이라는 것이다. 동 규정은 주식과 증권, 상품선물을 대상으로 한다<sup>44)</sup>.

요약하면, (a) 공매도를 종료할 때 생기는 이득의 성격은 단기자본이득이다<sup>45)</sup>. (b)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공매도가 종료될 때 또는 동 자산이 매도될 때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sup>46)</sup>.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이 처분될 때 생기는 이득은 단기이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별히 공매도 종료일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매도의 종료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은 종료일 현재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공매도의 종료에 사용된 자산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장기자본손실로 취급된다<sup>47)</sup>.

#### 마. 전환거래 규정

§1258은 간략하게 전환거래(conversion transaction) 규정이라고 부른다<sup>48)</sup>. 전환거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래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i)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모든 투자소득이 해당 거래의 시간가치(time value)에 기인하는 것이어야 하며<sup>49)</sup>, (ii)

44) IRC §1233(e)(2)(A)

45) IRC §1233(b)(1)

46) IRC §1233(b)(2)

47) IRC §1233(d)

48) 정식 명칭은 "Recharacterization of gain from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s"이다.

49) IRC §1258(c)(1)

다음의 거래 중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sup>50)</sup>: (a) 자산을 보유하고 동 자산을 판매할 계약을 거의 동시에 맺었거나 (b) 스트레들 (c) 기대수익이 투자의 시간가치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광고·판매된 거래 (d) 기타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거래.

본 규정에서는 전환거래에 대하여 자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적용가능한 귀속 소득액(applicable imputed income amount)'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한 자본이익을 경상소득으로 재규정하도록 하고 있다<sup>51)</sup>. '적용가능한 귀속 소득액'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자액으로서, 이러한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되는 채권 이자율의 120%를 사용한다<sup>52)</sup>. 이러한 범위를 초과하는 소득액은 자본이익으로 취급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동 규정도 납세자들이 경상소득을 자본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래를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라고 하겠다.

### 바. 양도 간주 규정

양도 간주 규정 (§1259: constructive sale rules)<sup>53)</sup>은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7년에 의하여 도입된 남용방지규정이다.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치가 상승한 포지션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익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sup>54)</sup>: 보유 자산과 동일한 또는 거의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i) 공매도를 할 경우<sup>55)</sup>, (ii) 상계 명목원금계약을 맺는 경우<sup>56)</sup>, (iii) 이를 매도하는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을 맺는 경우<sup>57)</sup>.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현물 주식에 대하여 공매도하는 경우를 보자<sup>58)</sup>. 이 경우 보유 주식을 담보로 현물 주식을 대여하여 공매도할 수 있는데, 빌린 주식을 갚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공매도에 대한 인도가 일어날 때까지 손익의 인식이 이연된다. 그러나 사실상 계약 당시 계약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하여 이미 이익을 확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익의 인식을 차후로 미룸으로써 조세를 이연하는 것이다.

50) 각각 IRC §1258(c)(2)(A)~(D)

51) IRC §1258(a)

52) IRC §1258(b)(1)에 해당하며 지표채로서 주로 미국 재무부 국채를 사용한다.

53) 정식 명칭은 "Constructive sales treatment for 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s"이다.

54) IRC §1259(a)(1)

55) IRC §1259(c)(1)(A)

56) IRC §1259(c)(1)(B)

57) IRC §1259(c)(1)(C)

58) 공매도 가운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short-against-the-box라고 한다.

달러들이 투자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한 증권에서 나오는 손익은 경상손익이 아니라 자본손익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장기투자손익을 자본이득으로 볼 것인가 경상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 구분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클린턴 행정부 시절 도입된 본 조항은 가치가 상승한 포지션에 대한 양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납세자는 시장가격으로 그러한 포지션의 이익을 계산하여 납세하도록 되었다.

특기할 것은 손실이나 이익의 기회 중 어느 한 쪽만을 줄이는 거래는 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내가격(in-the-money) 풋옵션을 매입하는 경우, 손실의 가능성은 봉쇄를 하였으나, 이익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동 거래는 양도 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 달러 시가평가 규정

증권달러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달러 시가평가 규정 (§475)<sup>59)</sup>이 적용된다. (i) 달러들이 재고로 가지고 있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한다<sup>60)</sup>. (ii) 과세연도말에 재고 이외의 목적으로 달러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들도 당시의 시가로 평가되고<sup>61)</sup>, 손익은 당해 연도에 인식된다. 차후 손익이 실현될 경우, 시가평가된 손익에 대하여 조정한다<sup>62)</sup>. 시가평가로 계산된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취급된다.

본 조항에서 말하는 증권에는 주식, 채권과 다양한 종류의 파생금융상품이 포함되며, 달러들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은 동 규정에 따른 예외로 취급된다<sup>63)</sup>. 즉 달러들이 투자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한 증권에서 나오는 손익은 경상손익이 아니라 자본손익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장기투자손익을 자본이득으로 볼 것인가 경상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 구분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59) 정식 명칭은 "Mark to market accounting method for dealers in securities"이다.

60) IRC §475(a)(1)

61) IRC §475(a)(2)(A)

62) IRC §475(a)(2)(B)

63) IRC §475(b)(1)(A)

동 규정의 제정 이전에는 딜러들이 채고 증권을 그들의 절세목적에 따라 원가기준 또는 시가기준 등의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채택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딜러는 유가증권의 채고 포지션을 파생금융상품으로 헤지함으로써 손익의 인식 시점을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추구하였다. 동 규정은 이와 같이 장부상 이득의 실현은 연기하고, 손실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실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 규정은 또한 상품딜러들에게도 그들의 보유 상품에 대하여 시가평가와 경상손익의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sup>64</sup>. 물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택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득이나 손실이 실현된 후에 동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증권이나 상품의 트레이더(trader)<sup>65</sup>들도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다<sup>66</sup>. 즉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나 상품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적용하고,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취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단기 거래(day trade)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매일 실제 거래를 종결시켜 손익을 실현시키기 때문에 시가 평가의 적용이 장부관리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 거래(position trade)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시가 평가를 통하여 연말에 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이익의 실현 연기가 불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다.

또한 §475 적용 딜러나 트레이더들에게는 위장 매매(wash sales)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시가 평가가 되어 연말에 손실뿐 아니라 이득도 실현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위장 매매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연중 수많은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위장 매매 해당 거래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모두 연말에 위장 매매 규정에 맞게 회계 처리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장부 정리를 필요로 한다. 위장 매매 규정의 배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장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선택이 주는 이점은 손실을 예상할 때 크다고 하겠다. 손실을 자본손실이 아닌 경상손실로서 취급하게 되면, 이연만이 아니라 소급 공제도 가능하고, \$3,000 상한의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득의 경우 장기자본이득으로 취급받지 못하면 세율 면에서 불리하나, 트레이더의 경우는 대부분 단기투자이득이기 때문에 장기자본이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의 이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64) IRC §475(e)

65) 자신의 계정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가운데 시장에서 단기적인 가격변동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래 활동이 활발하고,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거래에 종사한 사람은 스스로를 납세 신고시 트레이더로 신고할 수 있다. 트레이더는 미국 국세청이 정한 일련의 기준을 통하여 인정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투자자(investor)로 분류된다.

66) IRC §475(f)

외환거래관련 특별규정인 § 988의 핵심은 외환거래 손익의 경상손익 취급이라고 하겠다. 즉, “§ 988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의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규정하여 이자 소득 또는 이자 비용으로 취급한다.

#### 아. 외환거래 규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미국세법에서 특별한 규정(§988)<sup>67)</sup>을 두고 있다. 외환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일단 §988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파생금융상품으로서 통화선도, 통화선물, 통화옵션과 통화 명목원금계약<sup>68)</sup>, 구조화 증권과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외환거래관련 특별규정인 §988의 핵심은 외환거래 손익의 경상손익 취급이라고 하겠다. 즉, “§988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의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규정하여<sup>69)</sup> 이자 소득 또는 이자 비용으로 취급한다<sup>70)</sup>.

그러나 동시에 §1256 계약에 속하는 것은 이들 ‘외환거래 규정’의 예외가 된다. 통화 선도, 선물, 옵션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동 거래가 스트래들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자본 손익으로 취급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sup>71)</sup>. 따라서 §1256 대상 거래 중 ‘통화계약’에 장내 통화선물과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의 외환거래가 포함되는데, 장내 통화선물은 물론이고, 장외 은행간 시장에서의 선도거래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988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도거래와 같은 경우, 납세자가 §988 대신 §1256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1256을 선택하면 40/60 규정에 의하여 장기 자본이득의 비중이 6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 반면 이러한 선택은 손실이 큰 경우에는 불리하다. 왜냐하면 §988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됨으로써 경상손실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 규정에서는 “§988 헤지거래”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다. 통화헤지거래로 인정되면, 즉 “§988 거래”가 “§988 헤지거래”의 일부를 구성하면 그 헤지거래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체 “§988 거래”가 헤지거래와 통합되어 하나의 거래로 취급된다. “§988 거래”가 헤

67) 정식 명칭은 “Treatment of certai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이다.

68) 스왑, 캡, 플로어, 칼라 등

69) IRC §988(a)(1)(A)

70) IRC §988(a)(2)

71) IRC §988(a)(1)(B)

지거래의 일부를 구성하는가에 있어 판단은 §475(달러 시가평가 규정), §1256(시가평가 규정), §1092(스트레들 규정) 등의 시가평가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sup>72)</sup>.

#### 자. 특례규정의 시사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례규정이 그 복잡함을 더하고 있다.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에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악용에 대한 방지 규정들이 많다. 특례규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관통하는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파생금융상품거래를 본업으로 하는 딜러나 트레이더의 경우, 그 손익은 영업의 결과이므로 영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준다. 즉 일상적인 영업의 결과로 보고 동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취급함으로써 손실 공제에 있어 제한을 줄여준다. 딜러들에게는 위장매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영업 과정에서 매매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주는 것이다.

둘째,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있어 몇 가지 거래가 동시에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들을 통합하여 처리한다. 헤지거래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헤지거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트레들의 경우에도 상계 포지션에서 손실은 이익과 상계하며, 미실현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만 예외로 공제를 인정하여 준다. 위장매매의 경우에도 헤지와 다른 구조이기는 하지만, 손실을 실현하고 다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두 개의 거래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손실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거래의 실체를 중요시한다. 이것은 남용방지 규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장매매와 같은 것은 동일한 자산의 매도와 재매입을 통하여 장기 투자를 하면서 중간에 손실 실현에 따른 과세혜택을 보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거래의 실체로 보면 장기 투자라고 하겠다. 따라서 손실공제를 허용해 주지 않는다. 양도 간주의 경우에도 실제로 공매도와 유사한 구조를 통하여 이익을 이미 확정짓고, 다만 이익의 실현을 연기하는 경우, 과세이연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다. 거래의 실체로 보면 이미 이익은 실현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성격이나 장단기 투자기간의 판정에 대한 규제 등도 남용방지 규정의 하나라고 하겠다. 최대한으로 유리한 과세 취급을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존 세제의 허점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납세자들의 이러한 성향을 방지하고자 거래의 실체에 준거하여 소득의 성격과 투자기간의 장단기 여부를 법률로써 규제하는 것이다. <표 4>는 이러한 특례규정의 성격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72) IRC §988(d)(1)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례규정이 그 복잡함을 더하고 있다.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에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악용에 대한 방지 규정들이 많다. 특례규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관통하는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파생상품관련 특례 규정의 성격

특례 규정	특례 규정의 목적					
	특정 거래 집단의 특성 고려	통합 과세	남용 방지 (실질과세)	시가 평가	소득의 성격 규제	투자기간 분류 규제
시가평가규정		○ <sup>1)</sup>		○		
헤지 관련 규정	○	○			○	
위장매매 규정	○ <sup>2)</sup>		○			
스트래들 규정		○ <sup>3)</sup>	○			○
공매도 규정			○			○
전환매매 규정			○		○	
양도 간주 규정			○			
딜러시가평가 규정	○			○	○	○
외환규정		○ <sup>4)</sup>			○	

주: 1) §1256 헤지 거래의 경우  
 2) 딜러에 대한 적용 배제  
 3) 부분적 손실 공제 포함  
 4) 통화 헤지 거래의 경우

### III. 정책 시사점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세제를 정립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미국의 소득세제는 포괄주의 세제라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생각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세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이다.

자본에 대해 우대적인 세제, 즉 자본이득세율이 통상적인 소득세율보다 낮을 경우 자본의 형성을 돕는가하는 문제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론적으로 자본이득세율의 인하가 과연 자본형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본 유치를 위하여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종류의 자본 우대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나라들은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거친 장기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경상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의 1/2에도 못 미치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작년에 발표된 부시 행정부 조세개혁 자문단의 세제개혁안에도 자본이득의 경우 소득의 75%를 공제하여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는 안이 제시되고, 일부 공급론자의 경우 아예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본이득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부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를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동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어 중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자본이득세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경우에는 소액주주 거래에 대해서 장단기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는 등 자본이득세의 전반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만일 극단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가 바람직하다면,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헤이그-사이먼 식의 포괄적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 도입을 검토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현물시장과의 연계성이다.

파생금융상품은 그 기초가 되는 현물시장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두 시장 간에는 불가분의 연계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차익거래에 의한 시장 균형가격의 도출에서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현물시장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

따라서 차익거래나 헤지거래와 같이 현·선물시장의 연계관계를 이용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양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한 결과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즉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물시장 과세의 병행 도입이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

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면 파생상품 시장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sup>73)</sup>. 따라서 차익 거래나 헤지거래와 같이 현·선물시장의 연계관계를 이용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양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한 결과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즉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물시장 과세의 병행 도입이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인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일단 연계 거래의 손익 공제 허용으로 충분할 것이다. 즉 연계 거래의 경우 한 시장에서의 손실을 다른 시장의 대칭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이득으로부터 전액 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거래의 성격상 헤지 거래와 차익 거래의 경우에는 연계 거래의 공제를 허용하는 한, 통합 계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일은 없으며, 따라서 이월 공제 등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 투기거래의 경우에는 시장 유동성 공급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투자 손실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열거주의 소득세제를 유지하는 한, 연계거래에서의 손실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며, 타소득과의 결손금 통산을 허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에서는 소득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것은 미국이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 우대세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열거주의하에서 파생금융상품 소득은 또 하나의 과세대상 소득이 될 것이며, 자본이득과 경상소득으로의 구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헤지 거래와 차익 거래 등 연계 거래의 식별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소득의 장단기 구별에 의한 장기자본이득 우대제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종합적인 시각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이 자본 형성의 일차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헤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최초 거래 계약체결의 시기와 반대거래 계약체결의 시기 간에 차이가 있고, 동 기간 동안 계약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소득 인식 시기에 있어 어떠한 기준을 채택하는가가 과세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을 유발하게 된다. 세무회계상 손익의 인식 방법에

73) 윤창현(2004)은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해서는 미국의 예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것이 보편적이며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KOSPI 200 선물 및 옵션의 경우에는 장내거래인 만큼 시가평가에 의한 과세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제도의 도입에 있어 현재로서 가장 큰 걸림돌은 현물시장에서의 과세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주가지수 상품의 경우,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비과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금융시장에 미칠지 모르는 부정적인 영향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진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조만간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단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과세가 어렵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거래세 도입이 차선책이라고 생각된다. 거래세의 도입은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를 고려할 때 세원개발 및 세수증대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제 KOSPI 관련 상품의 경우 거래세를 도입함에 있어 시장에서의 저항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시장으로의 이탈 우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일부 품목의 경우 순차적인 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로는 자본시장에서의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시장에서의 거래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세 도입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향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과세제도가 도입되면 그와 동시에 거래세는 폐지되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과세가 어렵다면 거래세 도입이 차선책이라고 생각된다. 거래세의 도입은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를 고려할 때 세원개발 및 세수증대 효과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일부 품목의 경우 순차적인 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윤창현, 「파생상품과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선물학회 특별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4. 10.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2004년 세계 선물·옵션시장 동향』, 2005. 4.
- 홍범교,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 Anson, M., *Accounting and Tax Rules for Derivatives*, Frank J. Fabozzi Association: New Hope, 1999.
- Conlon, S. and V. Aquilino, *Principles of Financial Derivatives: US and International Taxation*, Warren, Gorham & Lamont: Boston, 1999.
-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
- The U.S. Code, Title 26

##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 : 기본보조금에 대한 검토



김 현 숙 전문연구위원 (hskim@kipf.re.kr)

### I. 서론

정부의 재정지출방식에 대한 논쟁은 아주 고전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지출방식이 가져오는 효과가 비용 효율성, 분배 효율성, 형평성 차원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최근 들어 영유아 보육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정투입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부문이다. 영유아 보육에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어떤 형태의 재정지출 방식이 보다 서비스 이용아동의 수를 늘리고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기본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전체에게 연령에 따라 서비스 개선금의 형태로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은 2006년 영아에 대해 시작되었고 2007년부터 유아에게도 확대될 예정인 기본보조금의 내용과 목적을 살펴보고, 기본보조금을 도입할 경우 원래 목적인 바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데 보다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산업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정부개입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보육서비스 제공시설 수준 및 형태와 서비스 가격에 대해 규제를 실시한다.

## II. 정부의 보육재정 운용방식의 원칙

### 1. 정부의 보육산업 개입방식

보육산업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시장실패<sup>1)</sup>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정부개입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보육서비스 제공시설 수준 및 형태와 서비스 가격에 대해 규제를 실시한다. 즉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직접 통제한다.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보육관련 시설의 기준을 법령 등을 통해 제시하거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시설에 한해서만 인가해주는 형태로 공급자에게 진입장벽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공급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나아가 공급자에 대한 기준 제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공급자의 수준을 제한할 때 정부가 시설인가면허를 직접 제공할 것인지 일정 기준에 도달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제공할 것인지 등에 따라 시설간의 경쟁이나 소비자의 선택범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정부의 강력한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는 반대로 시설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공급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산업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공급자간 경쟁이 위축되고 따라서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보육산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는 보육서비스의 가격규제 형태로 나타난다. 보육서비스는 사적 재화이지만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이므로 적절한 가격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가격규제의 논리이다. 공공재나 가치재(merit

1) 보육서비스는 사적 재화이다. 그러나 보육산업에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외부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현숙(2005) 참조.

good)에 대한 가격규제의 형태는 주로 수익률 (rate of return) 규제, 가격상한제(price-cap) 등이 존재하는데 보육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격상한제가 사용되고 있다. 가격상한제는 다른 형태의 가격규제에 비해 규제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로도 가격을 규제할 수 있고, 비용절감의 인센티브를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보육산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가격규제는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시장실패의 다른 요소인 외부성을 보정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산업에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의 외부성을 가진 산업에는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까지 서비스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시설 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요자 보조금의 주요 방식은 소득층에 따른 바우처 형식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형태이다. 이 두 방식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며, 소비자로 하여금 액면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요자 보조금은 보육서비스를 수혜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며(public financing), 서비스의 공급은 시장을 통한 경쟁적인 공급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수요자 보조금 중 세액공제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경제활동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바우처도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가 보육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여러 시설 중 부모가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Robins(1991)는 수요자 보조금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 효율적(cost effective)이며 보조금으로 인해 부모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이것이 세수를 증대시키게 되면 오히려 정부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급자 보조금은 시설의 아동 정원에 비례하여 제공되거나 교사에 대한 인건비에 직접 연계하여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공급자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거나 시설의 지출 중 일부를 소득공제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아동정원에 비례하거나 교사 수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일반적 공급자 보조금은 보육시설 공급자들로 하여금 낮은 비용으로 시설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시설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교사급여 등과 직접 연계되면 시설의 서비스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설의 지출 중 교사의 교육연수나 시설투자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요자 보조금의 주요 방식은 소득층에 따른 바우처 형식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형태이다. 이 두 방식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며, 소비자로 하여금 액면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요자 보조금은 보육서비스를 수혜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며(public financing), 서비스의 공급은 시장을 통한 경쟁적인 공급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공급자 보조금은 동시에 공급시설간의 경쟁을 약화시켜 보조금의 투입이 곧바로 서비스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교사의 급여와 연계된 보조금을 제공할 경우, 교사의 이직률 등이 낮아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제고될 수 있으나 시설운영자의 비용절감 노력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부 보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투입한 자원만큼 서비스로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셋째,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통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북유럽 국가들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은 방법은 정부가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시설설비 기준 등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질적인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보육서비스 자체는 동질적인 재화가 아니므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모든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공급자의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에 쉽게 노출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방식은 정부의 전형적인 보육산업 개입방식으로 구체적인 보조금의 형태나 정부의 규제방식, 국공립 운영형태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위의 세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보육산업의 시장실패에 대응하고 있다.

## 2. 보조금 지급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정부의 보육에 대한 보조금 제공은 위에 기술한대로 수요자 보조금과 공급자 보조금으로 나뉠 수 있다. 수요자 보조금과 공급자 보조금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부족하다. 우선 효율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의된 것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성을 “비용 효율성”(Cost Effectiveness)의 개념에서 접근한다. 비용 효율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2) 국공립 보육시설의 이용형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북유럽국가들은 시설의 소유와 운영을 모두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육시설의 설립은 정부가 하되 그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outsourcing)하면서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시설운영비를 제공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이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는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육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할 때 달성하려는 목표는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 시설이용 아동 수를 증가시키고, 시설이용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다<sup>3)</sup>.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측정의 일차적인 기준은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교사 1인당 아동 수, 교사의 교육 및 경력수준이 매우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보육서비스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비용이 동일해도 시장에서의 경쟁정도나 시설운영자의 경영성과에 따라 서비스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사의 수준 및 교사의 노동 강도만이 아니라 시설의 효율적 경영을 돕는 공급자간의 경쟁 환경의 조성도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보육산업을 굳이 산업구조로 분류하면 독점적 경쟁산업에 가장 가깝다. 우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사하지만 질적 서비스 수준은 차이가 있어 독점적 경쟁산업의 대표적인 특징인 차별화된 상품이 다량 존재한다는 측면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공급자는 일정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적 경쟁산업의 또 다른 특징인 진입장벽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다른 독점적 경쟁산업(예 : 음반, 서적 등 출판물 시장)과는 차이가 있다. 시장 내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조치들이 있어 다른 독점적 경쟁산업에 비해서는 정부가 설정한 인위적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모든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한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갖춘 공급업자는 시장에 신고제나 허가제를 통해 진입할 수 있으므로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진입장벽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시설이 공존하게 되면 성격이 다른 공급자가 공존하므로 일반적인 독점적 경쟁시장의 공급자의 특성과는 다르다. 보육산업은 제공하는 재화의 성격상으로는 독점적 경쟁에 가깝지만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규제가 병행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론적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은 많은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탈퇴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 내 공급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윤이 없는 상태가 된다<sup>4)</sup>. 경제적 이윤이 0인 것은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하나 가격이 한계생산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팔수록 공급자에게 유리하며 거래되는 재화가 많아질수록 사회적으로도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감소하게 된다.

3) 시설이용 아동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만2세 이하의 영아를 공적인 시설에서 보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매우 낮아 이를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보육산업에 대한 정부개입목표는 그 외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활성화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4) 물론 가격상한제와 같은 규제가 없어야 가격을 통한 시장균형의 달성이 가능하다.

보육산업은 제공하는 재화의 성격상으로는 독점적 경쟁에 가깝지만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규제가 병행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독점적 경쟁시장에 제공되는 수요자 보조금은 사회전체의 자중손실을 감소시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므로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단 위와 같은 전제는 소비자가 보육시설의 가격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성립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모는 보육시설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취약할 수 있으므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수요자 보조금이 반드시 경쟁을 강화하고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심각한 경우, 수요자 보조금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공급자 보조금은 공급자의 시설운영비용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므로 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시장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급시설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공급자 보조금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까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sup>5)</sup>. 또한 보육에 대한 공급자 보조금 제공시, 교사인건비와 보조금을 직접 연계하게 되면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단, 공급자 보조금은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경영개선의 노력 없이도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투입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며, 시설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용효율성을 보조금의 효율성에 대한 지표로 고려할 경우 결국 보육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데 어떤 보조금이 효율적인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여건과 관계가 깊다. 보육산업이 초기단계여서 보육시설이 부족한 경우, 공급자 보조금을 통해 시설 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보육의 초과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반면, 이미 보육시설 공급이 양적으로는 충분하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 면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수요자의 선호를 통해 공급자가 선별되도록 하는 것이 바

5) 독과점 대기업의 경우에 공급자 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생산량을 독과점 균형수준보다 확대하는 보조금 정책은 매우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전력이나 집단에너지 사업에 공급자 보조금을 제공하여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

람직하다. 결국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상태와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보조금의 효력이 달라질 것이다.

수요자 보조금과 공급자 보조금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은 대부분 수요자 보조금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용 효율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반대되는 결과도 존재한다. Coady and Parker(2002)는 멕시코의 PROGRESSA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자 보조금과 공급자 보조금이 갖는 비용 효율성을 학교에 등록된 아동 수에 근거하여 비교하였다. 새로운 학교를 건설하는 경우와 학교에 등록하는 아동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등록아동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학교에 등록하는 아동 수를 증가시키는 데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arker(1989)는 수요자 보조금제도인 바우처가 아동보육의 가격, 공급, 서비스 수준의 어떤 것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발견할 수 없고, 바우처가 오히려 여러 가지 위험요소만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주택관련 산업에 대한 분석이기는 하지만 Shroder and Reiger(2000)은 미국의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결과, 저소득층 가구에게 신규주택의 건설과 관련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기존주택의 렌트를 지불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비용 차원에서 효과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McClure(1998)은 신규주택 건설의 비용과 렌트 지불 비용을 장기 할인비용의 차이는 임대주택시장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신규주택을 건설하여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택관련 보조금에 대한 분석은 보육산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보육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직접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보육서비스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자료나 대상 프로그램 등이 제한적이어서 결과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수요자 보조금과 공급자 보조금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비용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러 가지 전제조건과 현실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Duncan(2003)은 수요자 보조금은 부모의 경제활동참여를 장려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높은 수요를 자극하며, 보육에 대한 추가수요를 창출한다고 정의하였다. 반면 공급자 보조금은 보육시설을 증대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보육서비스 양의 증가는 수요자 보조금과 공급자 보조금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 역시 수요자의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공급자가 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보조금의 효과 정도는 시장상황, 수요공급탄력성, 정보의 흐름이나 현실적인 제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보조금의 집행방식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나 시장 환경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제공되며, 보조금의 수혜계층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아동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되어 보편적인 지원의 형태를 띠게 된다. 반면 민간에 의한 보육시장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바우처나 세액공제 형식의 수요자 보조금이 주요한 형태로 이용되게 된다.

### III. 외국의 보육관련 보조금 운용사례

국가마다 보조금의 형태나 수혜범위 등은 육아에 대한 정부역할의 범위와 연계되어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육산업에 대한 개입의 형태 중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공급자 보조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바우처와 자녀세액공제 형태의 수요자 보조금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급자 보조금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의 집행방식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나 시장 환경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제공되며, 보조금의 수혜계층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아동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되어 보편적인 지원의 형태를 띠게 된다. 반면 민간에 의한 보육시장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바우처나 세액공제 형식의 수요자 보조금이 주요한 형태로 이용되게 된다. <표 1>은 선진국들의 육아보조금 지원방식을 요약한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급자 보조금을 주요한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급자 보조금을 주요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국가들은 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로 전체 보육시설이나 일부 보육시설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도 병행하고 있다.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의 형태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보조금 지급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정부가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층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성이 적다.

반면 영어권 국가들은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을 주요한 보조금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어권 국가들은 수요자 보조금의 형태로 중간소득층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세액공제제도(환급가능한 자녀세액공제도 포함)를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용시설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보조한다. 한편 공급자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 저소득층관련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나 일반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다.

〈표 1〉 국가별 보조금 정책

국 가	수요자 보조금	공급자 보조금	고용주 부담 및 공제
<b>영어권</b>			
호주	◎	△	고용주부담 공제
뉴질랜드	○	◎	×
영국	◎	△	고용주부담 공제
미국	◎	△	고용주 부담공제
캐나다	◎	△	
<b>북유럽 국가</b>			
덴마크	×	◎	×
핀란드	*	◎	×
노르웨이	*	◎	×
스웨덴	×	◎	×
<b>유럽대륙</b>			
벨기에	○	◎	고용주 부담
프랑스	○**	◎	고용주 부담
독일	○	◎	×
이태리	×	◎	고용주 부담
네덜란드	○	○	고용주부담 공제
포르투갈	○	◎	×
스페인	○	◎	×

- 주: 1) ◎는 그 나라의 주요한 보조금 형태임을 표시.  
 2) ○는 보조금 형태가 존재함을 의미하나 주요한 형태는 아님을 의미  
 3) △는 보편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금 등의 특별한 목적의 기금 등을 이용하는 보조금임을 의미  
 4) ×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의미  
 5) 고용주 부담은 보육비용의 일부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  
 6) 고용주 부담 공제는 보육비용의 고용주 부담분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  
 7) \* 는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정한 연령이하의 영아나 유아에게 정률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적인 보육의 비용을 충당하도록 함을 의미  
 8) \*\* 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비용과 사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을 세금에서 공제

일반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공급자 보조금의 혜택시설도 보다 포괄적이다(프랑스 제외). 또한 공급자 보조금 중심의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수요자 보조금의 지출은 세액공제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를 직접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편, 수요자 보조금을 주요한 보조금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는 세액공제제도를 많이 이용한다.

고용주에게 피고용주 가구 아동의 보육비용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다수 존재한다.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고용주가 보육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영국, 미국, 네덜란드에서는 이를 고용주에 대한 세부담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수요자 보조금과 공급자 보조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나라인데 최근 들어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스웨덴도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급자 보조금과 수요자 보조금의 주요한 운용 형태를 주요한 보조금 형태별로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육아 선진국들은 몇 가지의 정책수단을 혼합하여 보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급자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시설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공급자 보조금의 혜택시설도 보다 포괄적이다(프랑스 제외). 또한 공급자 보조금 중심의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수요자 보조금의 지출은 세액공제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를 직접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편, 수요자 보조금을 주요한 보조금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는 세액공제제도를 많이 이용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조금 지급방식을 한 가지 유형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수요자 보조금과 공급자 보조금 중 어느 한쪽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유형별 보조금 형태

	수요자 보조금 형태	공급자 보조금 형태
수요자 보조금 중심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세액공제 : 영국, 미국, 캐나다</li> <li>○ 소득공제 : 미국, 캐나다</li> <li>○ 저소득층 보육료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는 인가받은 시설 이용자에게만 제공</li> <li>- 미국은 주단위의 프로그램만 존재</li> <li>- 영국은 제도 없음</li> </ul> </li> <li>○ 영국 바우처 도입('96. 4) 및 폐지('99. 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가받은 국공립 및 사립(영리포함) : 호주</li> <li>○ 인가받은 국공립 및 비영리사립 : 캐나다 퀘벡주</li> <li>○ 저소득층 대상 보육시설 : 미국, 영국</li> <li>○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시설의 10%(미국)~30%(호주)</li> </ul>
공급자 보조금 중심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 벨기에, 프랑스</li> <li>○ 소득공제 :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li> <li>○ 저소득층 보육료 보조 : 벨기에, 독일, 뉴질랜드, 포르투갈</li> <li>○ 사립보육수당 : 핀란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의 운영비용 지출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 덴마크 사립시설 거의 전무</li> <li>- 핀란드, 노르웨이 사립시설 제한적으로 존재(10% 미만)</li> <li>-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사립 시설 존재</li> </ul> </li> <li>○ 인가받은 국공립 및 사립(영리포함) : 노르웨이</li> <li>○ 인가받은 국공립 및 비영리 사립 : 포르투갈</li> <li>○ 저소득층 대상 보육시설 : 프랑스, 벨기에</li> </u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보육시설</li> </ul>

우리나라에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이나 시설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가구의 인정소득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차등보육료와 만5세 무상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수요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시설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 위탁경영을 수행하고 교사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공급자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 IV. 우리나라 보육관련 보조금

우리나라에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이나 시설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가구의 인정소득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차등보육료와 만5세 무상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수요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시설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 위탁경영을 수행하고 교사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공급자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민간중심으로 보육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보육예산 중 수요자 보조금의 비중이 큰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III장의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수요자 보조금을 주요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세액공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액공제 형태의 보육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는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작될 때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형태로 보육을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즉 보육을 통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위한 법적, 물적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최근까지 없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세법 체계상 세액공제제도가 제한적으로 사용<sup>6)</sup>되고 있으며 보육비용과 관련한 세액공제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인 소득과약, 보육비용과약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보조금 형태는 “기본 보조금”으로 2006년부터 이미 영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의 잠정적인 계획대로라면 2007년에는 유아에게까지 확산될 예정이다. 위의 보육관련 보조금에 대한 원론적 분석과 외국 보조금 사례로부터 새롭게 도입 확장될 예정인 기본보조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존재하는 세액공제 형태는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이다.

### 1. 현행 보육관련 보조금의 종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관련 정부보조금의 종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우리나라 보육관련 보조금(2006년 현재)

		기준 및 지원방식	여성가족부 담당	교육인적자원부 담당
수요자 보조금	차등보육료 (만0~4세)	소득계층별로 6층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병설, 사립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2007)
	만5세아 무상보육료	보편적 지원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병설, 사립 유치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소득인정액이 근로가 자 구 평균소득 이하 계층 의 둘째 자녀 이상에 대 해 연령별로 차등 지원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병설, 사립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2007)
	장애아 무상보육료	만12세 이하 장애아 전체	장애아 전담시설 및 혼합시설 이용아동	일반 유치원 이용아동
	입양아 무상보육료	시설이용 입양아 전체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병설, 사립 유치원
공급자 보조금	시설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정액지원	국공립, 법인 : 인건비 영 아반 80%, 유아반 30%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시 간연장시설 : 인건비 80% 민간 : 영아에 대해 정액	사립유치원 학급담임 수당
	차량운영비 지원	정액지원(월 15만원)	농어촌, 장애전담시설	없음
	교재교구비 지원	정액지원(연 100만원)	민간시설	없음
	육아지원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국공립확충, 증개축, 개 보수비,	국공립, 장애아전담, 보육 정보센터 설립 등	국공립 유치원, 통합육아 지원시설, 농어촌 시설
취업모 관련 시설지원	취업모 이용시설에 대한 추가지원	시간연장형, 민간시설 영 아반	종일제 운영유치원	
기본 보조금(2007 전면화 계획)		아동별로 연령에 따라 시설에 차등지원, 소득 과 무관한 보편적 지원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없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보육료를 인상하게 될 경우 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부모의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차액은 정부가 기본보조금 형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위의 보조금 중 2007년 잠정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요자 보조금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확대될 기본보조금은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수요자 보조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격규명이 다소 애매한 기본보조금이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 기본보조금 도입 및 성격

기본보조금은 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차등보육료 기준)와 표준보육비용의 차액을 정부가 서비스 개선금의 형식으로 시설이용 아동 수에 따라 공급자에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sup>7)</sup>에서 계산한 표준보육비용<sup>7)</sup>은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 1인당 투입비용과 유사하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 보육법령에 규정된 교사 대 아동비율, 아동 1인당 시설면적 등을 기초로 산출하였다. 전체 보육비용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 및 시설장, 관련 종사자 호봉표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현재 보육시설 아동의 20~30%는 현재 표준보육비용과 유사한 투입비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와 한국조세연구원<sup>7)</sup>에서 계산한 표준보육비용의 차이는 상당히 크며, 특히 영아의 경우가 그러하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보육료를 인상하게 될 경우 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부모의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차액은 정부가 기본보조금 형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7) 박기백 외(2005) 참조.

〈표 4〉 표준보육비용과 시설별 보육비용 및 보육료(2005년 기준)

(단위: 천원)

연 령	표준 보육비용*	국·공립시설 보육비용 (보육료)	민간시설 보육비용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만 0세	789	739 (299)	500 (350)	299
만 1세	524	570 (299)	440 (350)	299
만 2세	403	446 (247)	348 (288)	247
만 3세	267	208 (153)	198 (198)	153
만 4세	248	199 (153)	198 (198)	153
만 5세	249	199 (153)	198 (198)	153

주: \*는 박기백 외(2005) 참조

기본보조금은 연령별로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의 차액을 정부가 아동수에 따라 시설에 보조

기본보조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지급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한국 조세연구원의 표준보육비용에서 시설설치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을 제외하고 비용을 산정하여 2007년 기준으로 국공립의 경우에는 만0세아는 768,000원의 표준비용을 산정하였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의 85%<sup>8)</sup>를 표준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이 중 부모 부담분을 350,000원으로 설정하고 그 차액 즉, 418,000원과 303,000원을 각각 국공립과 민간보육 시설에 기본보조금 형식으로 시설에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기본보조금 차이는 2010년이 되면 해소되는 것으로 구체적 안을 설정하였다.

〈표 5〉 기본보조금 예시(2007)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만0세 표준보육비용 : 월 768,000원 (A)	만0세 표준보육비용 : 월 653,000원 (A)
만0세 부모부담액 : 월 350,000원 (B)	만0세 부모부담액 : 월 350,000원 (B)
만0세 기본보조금 : 월 418,000원 (A-B)	만0세 기본보조금 : 월 303,000원 (A-B)

주: 이는 잠정적인 계획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

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에 제공되나 아동 수에 따라 지원되므로 보조금 성격 자체가 이중적이다. 우선 시설이용 아동 수에 따라 지원되므로 아동별 지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인 공급자 보조금이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별

8) 민간보육시설 표준비용을 국공립의 85%로 산정하는 이유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전혀 없다. 다만 2010까지 민간보육시설 표준비용을 국공립의 수준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매년 85%(2007), 90%(2008), 95%(2009), 100%(2010)식으로 증가시켜겠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전통적 수요자 보조금은 공급시설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 등에 경쟁력이 없는 시설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현 기본보조금 지급은 서비스 수준도 낮고 소비자 만족도도 낮은 민간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만을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공급자간의 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여지가 있다.

정원에 따른 지원인 반면, 기본보조금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에 연계하여 연령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시설에 제공되기 때문에 수요자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 수에 따라 지원되므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설운영비 중 일정 항목과 직접적인 연계가 뚜렷하지 않아 일반적인 공급자 보조금과는 다르게 서비스 개선과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에서도 수요자 보조금 형태로 보인다.

한편, 기본보조금은 시설에 제공되는 보조금이므로 공급자 보조금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부모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나 차등보육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수요자 보조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모든 보육관련 시설에 제공되지 않는 한 기본보조금이 부모의 시설선택권을 제한하므로 공급시설간의 경쟁을 초래하기 어려우며 부모의 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수요자 보조금이 갖는 장점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보조금은 그 성격상 전형적인 수요자 보조금도 아니고 공급자 보조금도 아니어서 두 보조금의 형식이 갖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복잡한 문제를 창출할 수 있다.

전통적 수요자 보조금은 공급시설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 등에 경쟁력이 없는 시설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현 기본보조금 지급은 서비스 수준도 낮고 소비자 만족도도 낮은 민간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만을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공급자간의 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여지가 있다<sup>9)</sup>. 전통적 공급자 보조금은 시설의 특정 비용항목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의 외형적 서비스 관련 항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어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 기본보조금은 서비스 개선과의 직접적 연계가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때 인건비, 건축비 등의 항목과 연계되지 않으면 공급업자의 이윤만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9) 2004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만족도 순위는 1. 사립유치원, 2. 국공립 보육시설, 3.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유치원, 4. 가정 보육시설이다.

〈표 6〉 기본보조금의 특징

특징	수요자 보조금	공급자 보조금	기본보조금
소비자선택권 강화	○	×	×
공급자간 경쟁 활성화	○	×	△
서비스 개선항목과의 직접적 연계	×	○	△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	△

위와 같은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기본보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보조금의 기본 목적이나 다른 나라의 보조금 운용사례로부터 볼 때 기본보조금은 매우 특수한 형태이며 두 가지 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6〉은 서비스 개선항목과 기본보조금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기본보조금이 목표로 하는 보육서비스 수준의 개선은 소비자선택권 강화, 공급자간의 경쟁 활성화, 정부의 서비스 개선관련 항목에 대한 지속적 투자,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데 기본보조금은 이 중 어떤 항목과도 직접적 연계가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제공되는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은 서비스 개선 항목과 연계되는 루트를 찾지 못해, 부모의 보육료를 인하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투입비용은 그대로여서 투입비용을 증가시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보조금은 부모의 보육료 부담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대전제하에 그 차액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논리와 아동별 지원원칙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보조금으로서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보육서비스 수혜기회를 제공한다는 수요자 보조금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고, 동시에 공급자 보조금처럼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 3. 기본보조금 도입과 보육 서비스 수준개선

보육서비스의 수준개선은 〈표 6〉에 열거한 항목을 통해 가능한데 이를 크게 구별하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첫째는 보육서비스의 투입요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교사의 학력과 경력이 높아지고,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적어지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높아진다. 둘째, 동일한 투입비용으로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은 달라질 수

기본보조금이 목표로 하는 보육서비스 수준의 개선은 소비자선택권 강화, 공급자간의 경쟁 활성화, 정부의 서비스 개선관련 항목에 대한 지속적 투자,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데 기본보조금은 이 중 어떤 항목과도 직접적 연계가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있다. 시설운영자의 효율적인 경영과 수요자의 선호에 맞는 서비스 제공 노력은 더 높은 서비스 수준을 창출할 수 있다. 2004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더 적은 투입비용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병설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기본보조금은 투입요소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첫 번째 서비스 개선방법인 투입요소 수준을 제고하기 어렵다. 또한 수요자 보조금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높은 서비스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면, 소득층에 관계없는 기본보조금 지원은 시설이용에 대한 보조금의 탄력성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이용 아동 수의 증가나 서비스 수준의 제고에 있어 열위에 있다. 즉 소비자 선택과 시설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에도 적합한 형태의 보조금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기본보조금이 서비스 수준 개선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 2월 16일 공청회 자료에서 기본보조금 지원을 평가인증, 보육교사 급여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개선에 직접 연계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떤 식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2008년 초에나 모든 기관에 대한 1차적 평가를 완료할 수 있으며 3만여 개 가까운 시설을 2008년 초까지 완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2007년에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유아 기본보조금을 평가인증과 연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기본보조금을 보육교사 급여와 연계하기 위해 교사급여를 4대 보험액을 통해 역추적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시설장과 교사 모두 보험 불입액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과소 보고할 인센티브가 존재하여 보험액을 통한 교사급여의 역추적은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현재 영아기본보조금의 지원대상 기관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과 4대 보험료 불입액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 영아전담시설을 기준으로 한 교사의 최저임금수준은 법적으로 명문화된 최저임금과 유사한 곳(약 64만원)부터 100만원 수준까지 지자체별로 다양하여 기준

이 되는 급여를 찾기가 어렵다. 현 보육시설의 급여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이 상승하도록 임금을 조정해야 하나 임금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현 급여수준 대비 일정비율 상향조정 형태로 임금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아동1인당 지급되는 영아 기본보조금 총액이 모두 교사인건비로 연계되고 있지는 않아 시설장의 이윤으로 전가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

월별로 시설이용 아동 수가 변화하는 가운데 연간단위로 일정액의 정액이나 정률의 교사 급여 증가액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정원을 채운 시설에 만0세아 1인당 기본보조금 40만원을 지급하여 교사급여의 일정액을 상승시켰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 다음달에 아동 수가 줄게 되면 과연 교사급여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보조금 중 최소한의 액수만이 교사인건비로 연동되어 연간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개선금이 가장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인 교사 인건비로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기본보조금을 전통적인 공급자 보조금 형식으로 아동 정원에 따라 제공한다면 지자체(구청, 동사무소)에서 아동정원에 따라 보육교사에게 직접 정액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기본보조금이 교사급여와 연계된다고 해도 서비스의 개선여부는 불확실하다. 현재 보육교사 시장은 초과공급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시장임금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책은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도록 수급상황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교사의 교육수준, 경력 등 교사수준의 제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공급자에 대한 시설보조금이 서비스 수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설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그 기준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 전통적인 보조금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국가에서 공급자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호주의 경우에는 인증시스템을 통과해야 보조금 수혜가 가능하며, 뉴질랜드는 회계장부 제출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무료초기교육시설(3~4세 대상)에 지방교육청이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그 조건으로 기초단계 교육과정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공급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설별 아동정원이나, 교사 수, 시설규모나 서비스 제공시간(뉴질랜드)에 따른 지원이 대부분이며, 이와 같은 지원이 지속적인 보조금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시설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보조금은 시설이용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제공되므로 비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 부모의 보육료 부담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이유로 최고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 4. 기본보조금의 다른 문제점

기본보조금은 서비스 개선과의 연계가 약하다는 문제점 외에도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문제점을 수반한다. 첫째, 기본보조금은 시설이용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제공되므로 비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 부모의 보육료 부담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이유로 최고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2007년 기준으로 차등보육료가 포괄하는 소득층은 전체의 77.4%이며 이 중 15.6%만이 차등보육료 전액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으며 그 외 계층은 많게는 차등보육료의 80%에서 적게는 20%만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기본보조금은 소득상위 10%에게도 2007년부터 보조금을 제공하게 된다. 만0세아를 둔 도시가구 평균 근로소득의 100% 계층(2005년 만5세 이하 피부양자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가구의 월 평균소득 3,527,866원)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차등보육료 350,000원의 20%인 70,000원을 차등보육료로 받고, 표준보육비 768,000원과 차등보육료 차액인 418,000원은 기본보조금으로 보조를 받게 된다. 순 부모부담은 차등보육료의 80%인 280,000원이다. 반면 만5세 이하의 피부양자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볼 때 소득상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소득은 5,302,180원인 반면, 부모 순부담은 350,000원에 불과하여 두 계층간의 보육료 부담차액은 70,000원이다. 과연 이 차액이 부모의 소득차이를 고려할 때 적절한지 여부는 심도있게 분석해야겠지만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약 2,000,000원인 반면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도 꼭 필요한 지출항목으로 보이는 보육료 부담액이 최고소득층 10%와 70,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소득이 낮은 가구의 보육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표 7〉 기본보조금 도입시 가구의 소득과 보육료 부담

만0세아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기준	평균근로소득 100% 가구 (소득 51.4~77.4% 구간) 3,527,886원	상위소득 10% 가구 5,302,180원
총 보육비용(=표준보육비용)	768,000원	768,000원
기본보조금	418,000원	418,000원
차등보육료	70,000원	0원
순 부모부담액	280,000원	350,000원
순부모부담/근로소득	7.94%	6.60%

둘째, 시설이용가구의 아동은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는 반면, 시설 미이용 가구의 아동은 저소득층이어도 전혀 혜택이 없다. 따라서 차등보육료와는 달리 시설 미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아동수당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0)</sup>.

셋째, 현재 고안된 기본보조금제도는 보육시설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치원을 수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유치원 운영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가격과 서비스 수준의 조합을 선택할 때 선택가능한 조합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드시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제한 없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현재 정부는 보육료 자율화를 기본보조금과 연계하여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자율화를 허용하지 않고,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시설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자율화할 수 있다는 부분자율화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시나리오대로 기본보조금이 도입되면 지원액수가 상당하므로 공급자가 자율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기본보조금 지원은 보육료 자율화와 이를 통한 보육산업 경쟁력 강화와 오히려 배치된다.

10)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은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기본보조금은 보조금의 성격자체도 애매하고, 보조금을 도입하여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도 미약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도입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과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 V. 향후 대안과 과제

제IV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보조금은 보조금의 성격자체도 애매하고, 보조금을 도입하여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도 미약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도입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과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보조금을 대체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시나리오의 순위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부터 차선책 순으로 정리하였다.

### 1. 제1시나리오 : 기본보조금 폐지 내지 수준의 하향조정

가능하다면 기본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보조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차등보육료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보조금과 <표 3>의 항목 중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자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인지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 어느 정도로 보육료 부담을 차별화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연구에 기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운영비 지원의 공급자 보조금 항목은 혜택을 받는 시설에 대한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증제도를 통과한 시설에만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만약 기본보조금이 시설이용 아동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정액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sup>11)</sup> 소득수준에 따른 적절한 보육료 부담의 차이에 대한 근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며 현재처럼 부모부담 수준을 고정시킨다는 전제하에 기본보조금 대 차등보육료 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1) 기본보조금 도입취지나 구체적 도입방안을 고려할 때 이처럼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시설이용 아동에게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요자 보조금의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기본보조금을 전형적인 수요자 보조금으로 흡수하게 되면 보육시설만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아동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시설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기본보조금이 갖고 있는 한계를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기본보조금 도입이 확정된 것이라면 현실적인 가능성이 적은 대안이다.

## 2. 제2시나리오 : 기본보조금 도입을 연기

기본보조금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해야 한다면 (영아는 이미 도입됨) 서비스 개선항목과의 연계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 개선과 연계될 수 있는 하부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기본보조금을 도입하면 자칫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급여와 연계를 시도할 경우, 교사의 현 급여수준이 지자체 별로 차이가 크므로 이를 조사하고 기준이 되는 급여를 정한 후, 상향조정할 방법과 이를 아동인원 수의 변화에 따라 교사에게 지급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소한 인증제도를 통한 선별작업이 이루어진 후 인증제도와와의 연계를 조건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3. 제3시나리오 : 영아에 한해서만 기본보조금 지급

이미 도입된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영아에 대한 표준보육비용이 매우 높아 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은 존속시키고 2007년부터 도입예정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다. 단,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도 차등보육료와 비교하여 재분배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아에 대한 표준보육비용은 연령별로 차이는 있으나 248,000~267,000원 수준이므로 현재의 부모 보육료 부담액과의 차이는 50,000~100,000원 수준이다. 따라서 영아에 비해 아동 1인당 기본보조금 액수는 작으나 시설이용 유아가 많으므로 전체 유아 기본보조금 총액은 상당히 크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비용에 상응하는 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부모의 부담액은 영아보다 크지 않으므로 기본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총액을 수요자 보조금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수요자 보조금을 확대하게 되면 중간 소득층 이하의 가구는 기본보조금 도입의 경우보다 보육료 부담이 낮아질 것이며 상위

현재 계획안대로 2007년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도입된다면 최소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모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조금을 배분할 경우에는 연령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보육서비스 수혜시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계층만 50,000~100,0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을 폐지하게 되면 보육시설에만 기본보조금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왜곡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 기본보조금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단 현재 영아의 시설이용률이 낮아 영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현재 계획대로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확대되면 시설이용 영아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향후 정부 재정지출 수준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 4. 제4시나리오 : 유아 기본보조금 도입시 유치원 포함

현재 계획안대로 2007년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도입된다면 최소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모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조금을 배분할 경우에는 연령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보육서비스 수혜시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만3~5세의 경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아동에게 연령별로 동일하게 기본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기관간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보육서비스 수혜시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만3~5세의 경우, 종일제 기준인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 제공하는 기본보조금의 80%<sup>12)</sup>를 유치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 종일제와 반일제 아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시설구분 없이 반일제 이용아동에게는 종일제 이용아동비용의 80%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안 중 세 번째가 가장 바람직하나 종일제와 반일제 아동을 일일이 구분하여 지원을 달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전달체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집행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12) 80% 산출의 근거는 박기백 외(2005) 참조

## VI. 결 론

제IV장에서 제시된 기본보조금의 정의, 성격,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면 기본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보육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동일한 재원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은 매우 민감한 정책이슈를 다룬 것으로 현재 보육에 있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보조금에 대한 입장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급자 보조금이나 수요자 보조금이 가지는 목적과 장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보조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물론 한 나라의 정책집행 수단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나라의 사례나 이론적인 측면이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기본보조금 도입 잠정안은 이론적인 측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집행과정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도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도입하게 될 경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택도 제V장에 제시하였다.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현재 기본보조금 도입과 연계하여 논의되고 있는 보육료 부분 자율화 문제는 정부의 가격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II장에서 지적했듯이 보육산업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법 중의 하나인 가격규제를 폐지한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기본보조금 도입단계나 방안과는 독립적으로 보육료 상한선 현실화 혹은 보육료 자율화와 영리법인의 시장진입 허용 등 전면적인 시장경쟁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키워드**

## 참고문헌

- 김현숙, 『영유아 보육·교육과 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5. 11.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보육실태조사 제IV과제,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5.

현재 기본보조금 도입 잠정안은 이론적인 측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집행과정의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도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새싹플랜 : 중장기 보육계획』, 2006. 2.

유한옥, 『바우처제도 사례 및 추가도입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5. 11.

Coady & Parker,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Demand and Supply-Side Education Interventions : the Case of Progressa in Mexico,” FCND discussion paper No. 127, 2002.

Duncan, Alan, “The Economics of Childcare,” *Institute of Fiscal Studies*, 2003.

McClure, Kirk, Housing Vouchers versus Housing Production : Assessing Long-Term Costs, *Housing Policy Debate* 9(2), 1998, pp. 355-71.

Moss, Peter, “The US at the Crossroads : towards an Early Years European Partnership, in Facing the Future : Policy Papers,” Daycare Trust, 2001.

OECD, “Starting Strong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01.

Parker, M.D., Vouchers for Day Care of Children : Evaluating a Model Program, *Child Welfare*, 18, (6), 1989, pp. 633-642.

Robins, PK, “Childcare Policy and Research: An Economist’s Perspective,” In *The Economics of Childcare*, (ed.) DM Blau,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1991.

Rudolf Willem Turksema, “The Supply of Day Care,” Ph.D. Thesis, Universiteit Utrecht, 2000.

Shroder and Reige, Vouchers versus Production Revisited, *Journal of Housing Research*, Vol. 11, Issue 1, 2001.

Verry, Donald, Some Economics Aspec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 2000, pp. 95-122.

##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주>

### 조세 정책

#### 인도네시아 정부, 4대 중점산업 재생에 특별 감세안 추진

- 섬유, 제화(신발), 전자, 식료품 등 4대산업 회생목적
- 관세, 부가세, 사치세 한시적 보류 및 은행 융자 확대 추진

#### □ 개 요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율팀에서는 2005년 유가인상시 발표했던 세금우대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세금우대 대상으로 섬유, 전기/전자, 제화, 식료품 등 4대 산업을 지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의 수입관세와 1차 농산품의 부가가치세와 사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별감세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 감세안은 침체되어 있는 중점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임.

#### □ 감세안 세부내용

- 제안된 세금감면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의 수입관세 면제
- 1차 농산품의 VAT(현행 세율 10%) 면제
- 전자제품 사치세율 인하

- 섬유산업분야 자산평가이익에 대한 법인세(현행 세율 10%) 면제

이러한 조세감면이 시행되면 한시적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활성화 등을 통해 법인세 수입 등이 확대되어 이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들 4개 산업이 감면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수출규모가 커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중요한 산업이면서도 최근 경기침체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 □ 4대 중점산업 가동률 및 수출액 (2005년)

##### <2005년 4대 산업 산업별 가동률과 수출규모>

산 업	가 동 률	수 출 액
섬유/섬유제품	69%	86억달러
신발	73%	14억달러
전자제품	65%	65억달러
식료품	63.5%	17억달러

#### □ 섬유산업 관련 감세안 및 융자확대 추진 내용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로 자산평가, 밀수대책, 설비개선, VAT면제 등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자산평가 이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섬유업계가 은행융자를 획득하

는 데 유리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함.

현재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의 대달러 환율이 9,000 루피아대까지 떨어져 있으나 섬유업계의 자산평가 기준 환율은 2,300루피아에 머물러 있어 용자취득시 자산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함.

그러나 환율을 조정해 자산평가액을 재조정할 경우, 융자를 받기에는 유리하지만 반면에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함.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는 보조금 지출을 통해 상기 4대 중점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10%로 인하하는 안도 추진 중이라고 함(현재 인도네시아 은행 일반 대출금리는 18%대에 육박하고 있는 중임).

또한 인도네시아 섬유연합회(API)에서는 섬유 원자재 중 하나인 솜의 경우, 와히드 정권 때에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으나 미가공품인 솜에 대해서까지 VAT를 부과하는 것은 섬유업계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하고 이의 면제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중임.

#### □ 전자제품 및 식품산업

인도네시아 전자산업협회(Gabel)도 유가인상 이후 침체에 빠진 전자제품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치세 철폐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부의 감세안에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사치세 철폐로 인한 세수 감소를 경기회복과 수요 진작에 따른 VAT나 개인소득세의 증가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임.

1차 농산품에 대한 VAT철폐도 원래 금년 1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발표되었으나 금년 2월말에 발표된 투자환경 개선정책 패키지에서는 관계규정의 개정을 재무장관과 국회간의 협의 직후로 연기한 바 있음.

#### □ 한국 수출업계에 미칠 영향

이처럼 인도네시아에서 4대 중점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

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될 경우, 국내 수출업계가 얻게 될 혜택을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음.

산 업	한국 수출 영향
섬유/섬유제품	섬유기계 및 섬유부자재 수출 증가
신발	신발부자재 수출 증가
전자제품	전자제품 부품 수출 증가
식품품	식품가공기계 및 식품품 수출 증가

인도네시아 경기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대해 국내 수출업계가 이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사전에 준비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KOTRA 해외무역정보 4/19〉

### 한미 FTA 비관세장벽 철폐에 초점

- 미국 측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
- 비관세무역장벽 해결 위해 기존의 FTA 모델에 새로운 조항 추가 시사

#### □ 발언 배경

○ Wendy Cutler (Assistant USTR for Japan, Korea and APEC)는 4월 19일 Global Business Dialogue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 한국의 비관세장벽(이하 NTB)에 대해 발언함.

○ 이 발언은 USTR이 한미 FTA 공식협상 개시를 앞두고 미국 내 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100건 이상의 요청사항(U.S. industry submissions)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4월 20일 USITC가 개최한 한미 FTA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NAM(전미제조업연합)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 "NAM 회원사들의 가장 큰 우려는 비관세장벽에 집중되고 있음.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관세장벽

문제가 “독특한(unique)”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회원사들과 협력중에 있음. 현재 진행중인 USTR의 노력과는 별도로 합당한 협정 문구(text language) 마련을 위해 NAM 차원에서 노력을 진행중임”...

- 참고로, 현재 한미 FTA 협상의 진척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미국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국간 공식 협상은 5월 3일부터 개시되도록 되어 있음(협상개시일로부터 90일 동안 의회 차문 기간을 갖도록 명시되어 있음).
  - 현재 양국은 각각 협상 문구작성 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며, 5월 19일까지는 초안 전문을 교환할 계획
  - 양국은 4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약에서 17개 협상 분야를 두기로 합의했음(양측 수석대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와 Wendy Cutler USTR 대표보).

□ 미측이 제기하는 NTB 이슈 요약

- 다음의 이유를 근거로 커틀러 USTR 대표보는 기존의 FTA 모델에 새로운 조항 추가 준비중임을 시사
- “자동차, 제약, 의료장비 부문의 규제 투명성 부족”
- “삼성, 현대, 대우, SK 그룹 등 가족 소유 재벌 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경쟁 저해”
  - “비록 한국 정부가 재벌의 핵심 사업 분야 참여 제한, 상속법 개혁, 주식 투자 제한, 경영 다각화 의무화 등을 통해 재벌 개혁의 노력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은 여전히 한국 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FTA가 체결되더라도 이러한 재벌의 역할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을지 의문”
- “경쟁 측면에서 발견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
  -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규제 당국이 국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서 미국 대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올 2월 한국공정거래위

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웹브라우저가 포함되지 않은 윈도우 OS 버전을 함께 출시하도록 처분한 사례를 거론

□ 기 타

- 한국 쌀시장 vs 미국 경트럭 시장
  - Inside Trade에서는 한국의 쌀시장 개방과 미국의 경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가 한미 양국간에 “주고받기(tradeoff)”가 가능한 이슈로 미국 내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소개(한국은 쌀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적 범위에서 개선해주고, 미국은 경트럭의 관세를 제한적으로 인하하는 방법 등)
- 쇠고기
  - 알라바마 주 농장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되면서, 3월 즈음 미국 현장검사에 이어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계획에 차질 발생. 현재는 아이오와 주에 파견된 한국 측 전문가들이 문제의 소의 연령 파악을 위한 부검을 진행중
  - 문제의 소의 출생시점이 1997년 이전으로 판명되면, 애초에 예정됐던 현장검사를 4월말 내에 실시한 뒤, 그 직후부터 빼 없는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예정임.
  - Inside Trade는 미상원재정위원회 소속 직원인 Demetrios Marantis의 말을 인용해 쇠고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미 의회 내에서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주장

자료원 : Inside Trade <KOTRA 해외무역정보 4/21>

美, 페돈 번 석유회사에 ‘폭리稅’ 물리나

고유가로 인해 미국 휘발유 값의 폭등 양상이 계속되자 정치권이 석유회사들의 ‘폭리’에 대한 연방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 석유회사들이 고유가를 빌미로 휘

발유 값을 조작 또는 담합함으로써 국민을 속이고 폭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된다. 석유회사들은 정유능력을 최대한 가동하지 않아 공급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이용해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석유회사들에 대한 조사 요구는 공화당에서 더욱 거세게 제기된다. 공화당 지도부인 데니스 헤스터트 하원의장,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대표는 24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석유회사들의 가격조작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민들은 자동차 연료를 채워야 할지 등을 놓고 결단을 강요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 조사를 받고 기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석유회사들에 의한 가격 조작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직접 조사 착수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휘발유 값은 최근 2주 사이에 갤런당 25센트가 오른 2.90달러를 넘어섰고 올 여름엔 3달러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하원의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석유회사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 위원회의 조 바턴 위원장(공화당)은 이날 산하 감시조사소위에 석유회사들이 폭리에 따른 이익금을 어디에 쓰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의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칼 레빈 상원의원은 석유회사들의 폭리를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windfall tax)’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정치권의 이 같은 강경한 목소리에 대해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체스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주장은 공허한 수사로 가득 차 있고 휘발유 값을 낮추려는 실질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는 에너지 가격 문제가 중요한 선거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4/25〉

## 日, 외국인 투자 확대 위해 세제 개편 추진

일본 정부가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세제를 정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 외국기업이 일본 기업에 주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본 기업인수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그간 주식스왑을 통한 계약이 이뤄질 경우 벌금의 성격을 띤 세금을 부과해야만 했다.

세제가 개편되면 일본 기업은 외국기업의 제안에 쉽게 응할 수 있게 되어 대일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세제 변경 사항을 향후 몇 달간 논의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올 연말 전에는 논의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5년 안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배로 늘리려는 내각의 결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현재 일본의 FDI 비중은 국민총생산(GDP)의 2%에 불과해 기타 선진국의 경우 30% 비중인 것과 대조된다.

신문은 일본 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시행여부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 외국인 투자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본 세무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에 차별적이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 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외국 자본의 공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미 1년이나 미뤄진 이 법안에 또 다른 규정이 덧붙여질 것이 뻔해 결국 극소수의 외국 기업만 혜택을 볼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거나 파인수 기업주주의 조절 대다수 지지를 받는 조건으로 외국 기업의 주식교환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의장도 최근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에서 이 같은 조향이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인포맥스 4/26〉

### 대만, 영업세율 5%→6%로 인상

- 대만 재정부 영업세율 5%→6%로 인상, 빠르면 9월 실시 예정
- 대만 재정부가 "판매세제개혁추진팀"을 구성하여, 빠르면 금년 9월 영업세율을 현행의 6%로 제고하는 방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여 심사할 계획에 있음.
  - 영업세율을 현행의 5%에서 6%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의 세율 증대로 약 NT\$ 400억의 세수입 증가 전망
-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부가 영업세를 높일 경우, 대만 국내 물가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만 경제부와 경건회가 동안에 대한 심사숙고 및 영업세율 제고와 함께 부분 상품에 대한 화물세의 폐지 혹은 하락 검토를 통해 산업분야에 있어서의 충격완화를 제안하고 있음.
  - "판매세제개혁"으로 인한 물가 및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 1997년 일본에서 소비세를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 이후 일본 경제가 급격하게 후퇴했던 전례가 있어 세계 각국이 판매세제개혁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
- 재정부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영업세율 제고로 인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소비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재정부측은 영업세율을 1% 상승한 6%로 상향 조정

할 경우 NT\$ 100이내의 상품의 경우 세액의 증가분은 NT\$ 1에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저가상품의 경우 가격상승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하였음.

- 아울러 물가상승의 촉매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86년 "영업세개혁제도"의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公平會, 消保會, 主計處와 연합으로 "물가탑"을 구성하여 대만 국내 물가 변화를 감독할 예정임.
- 또한 재정부는 사전 3개월간, "판매세제개혁추진팀"을 조성하여 영업세 제고와 함께 전기, 음료 등 부분 화물의 화물세 취소와 인화세 폐지, 문화예술, 체육활동 오락에 관한 세 취소 관련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음. 재정부는 영업세 상향에 따라 증가하게 될 NT\$ 400억에 대한 세수입을 화물세 등 감소로 인해 발생할 NT\$ 200억 세손에 대한 보충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음.
  - "판매세제개혁안"은 반드시 입법회의 화물세, 오락세의 조정과 인화세 폐지에 대한 동의 후 이루어져, 정부가 경솔히 영업세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 영업세율 상향 조정에 대한 대만 기업의 입장
  - 최근 고유가 및 글로벌추세로 인해 제조업경쟁분야의 압박이 큼, 판매가격의 제고는 어려운 반면,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 등 생산원가는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세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업체들에게는 설상가상의 난국에 봉착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있음.

	국 가 명	영업세율(%)
아시아	대 만	5
	일 본	5
	싱 가 포 르	5
	한 국	10
	중 국	17
	태 국	7
	필 리 핀	10
	인도네시아	10
유럽	스 위 스	7.6
	영 국	17.5
	덴 마 크	25
	프 랑 스	19.6
오세아니아	호 주	10
	뉴 질 랜 드	12.5
아메리카	캐 나 다	15
	파 나 마	5
	니 카 라 과	15
	멕 시 코	15

자료원: OECD

### 〈검토중인 판매세제 개혁안〉

세목	개혁방향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영업세	§현행의 5%에서 6%로 §차별세율 고려 중: 식용유, 소금 등 필수품에 대해서는 5% 세율 유지	1%의 세율 증대로 약 NT\$ 400억의 세수입 증가 전망
화물세	징수범위를 축소하고, 음료, 평판유리, 전기 및 고무타이어에 대한 화물세 취소	세수입 손실이 NT\$ 118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인화세	폐지	세수입 NT\$ 78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오락세	골프장 밖의 오락세 항목을 제외한 문화예술, 체육성질을 가진 항목에 대한 오락세 취소	세수입 NT\$ 1.5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자료원: 중화민국 재정부

자료원: 경제일보(2006. 4. 24)

〈KOTRA 해외무역정보 4/28〉

### 독신근로자 조세부담률 높다

- 독신근로자 평균급여 조세부담률 OECD 국가 중 벨기에, 독일 이어 3위
- 4인가족 부양 가장 기준 조세부담률은 터키, 스웨덴, 폴란드 순으로 상위

#### □ OECD, 회원국별 조세부담률 조사 발표

○ 독신 근로자 및 4인가족 부양가장 기준 조세부담률 분석

- 자녀 없는 독신 근로자 및 2자녀를 둔 4인가족 가장 조세부담률을 분석

- 독신근로자의 경우 평균 급여 기준 및 평균 급여의 67% 수준에 달하는 근로자 기준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집계

- 자녀 2명을 둔 4인가족 근로자의 조세부담률은 평균 급여만을 기준으로 분석

○ 분석지표로는 조세격차를 사용

- 분석지표로는 총급여(기업에서 지불하는 GROSS 개념)에서 실제 수령 급여의 차이를 나타내는 조세격차를 분석지표로 사용

- 총급여는 현금 보조 및 복리후생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총량 개념

- 조세격차가 클수록 조세 부담률이 높은 상태를 나타냄.

- 정부의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책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음.

□ 독신근로자 조세부담 상위는 벨기에, 독일, 헝가리 순

○ 평균 급여 기준시 조세 부담이 큰 국가는 벨기에, 독일, 헝가리, 프랑스 순으로 상위

-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가 하위에 자리매김

순위	국가명	2003	2004	2005
1	벨기에	55.7	55.4	55.4
2	독일	51.5	53.3	51.8
3	헝가리	50.8	51.8	50.5
4	프랑스	49.8	49.8	50.1
28	뉴질랜드	19.7	20.0	20.5
29	멕시코	18.1	16.2	18.2
30	한국	16.3	17.2	17.3
OECD 평균		37.2	37.4	37.3

자료원: OECD

- 평균 급여 65% 기준시 조세 부담이 큰 국가는 벨기에, 독일, 스웨덴, 헝가리 순
- 하위는 평균급여 기준에서 순위를 조금 바꾼 멕시코, 한국, 뉴질랜드 순으로 하위

순위	국가명	2003	2004	2005
1	벨기에	49.6	48.9	49.1
2	독일	45.5	47.9	46.7
3	스웨덴	47.0	47.1	46.5
4	헝가리	44.5	44.8	42.9
28	뉴질랜드	18.8	18.8	18.9
29	한국	15.0	15.5	15.6
30	멕시코	12.8	11.0	14.1
OECD 평균		33.8	33.9	33.7

자료원: OECD

- 자녀 2명을 둔 4인가족 부양가장의 조세부담률 상위는 터키, 스웨덴, 폴란드
- 평균 급여 기준시 조세 부담이 큰 국가는 터키, 스웨덴, 폴란드, 프랑스 순으로 상위
-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가 하위에 자리 매김

순위	국가명	2003	2004	2005
1	터키	42.2	42.8	42.7
2	스웨덴	42.4	42.7	42.4
3	폴란드	41.6	41.8	42.1
4	프랑스	41.3	41.5	41.7
28	룩셈부르크	11.6	11.7	12.2
29	아이슬란드	9.7	10.6	11.0
30	아일랜드	6.4	8.5	8.1
OECD 평균		27.9	28.1	27.7

자료원: OECD

- 각국 조세 격차는 감소 추세, 일부국가는 저소득층 조세 감소에 좀 더 비중
- 조세격차 통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조세격차는 감소 추세
- 대부분 국가에서 독신가장 및 4인가족 가장의 조세 부담 모두 감소세 시현 중
- 실업률이 높은 일부 국가들은 저소득층 조세부담 감소에 비중
- 2000년과 2005년 평균 급여의 65% 기준 독신 근로자 조세격차를 기준시 프랑스(47.4→41.4%), 헝가리(48.5→42.9%), 슬로바키아(40.6→35.3%) 등은 큰 폭의 감소세 시현

자료원: OECD, Portfolio, EurActiv 등

〈KOTRA 해외무역정보 4/27〉

### 국가별 주택관련 세금은

해외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나라마다 다른 세금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택수요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취득단계 세금은 국내보다 낮은 편이나 보유단계 세금은 높은 편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취득세는 별도로 없고 등기이전세(매입가의 0.5%)만 내면 된다.

재산세는 실거래가의 1% 정도로 연 1회 납부한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일반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1년 이상 보유할 땐 최고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5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부부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만달러, 독신자는 25만달러까지 공제해 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캐나다의 취득세는 금액마다 차이가 난다. 5만 5천캐나다달러(1캐나다 달러=약 820원)이하는 취득세 부담이 없지만 25만달러 이하는 1%, 40만달러 이하는 1.5%, 40만달러 초과는 2%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주택가액의 약 1%)이다. 양도세는 개인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0~29%)을 적용한다.

영국 역시 취득세는 따로 없고 등록세(주택기준 1~1.5%)만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주택 가액의 1%)는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학생일 경우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20%(대부분 주택)이나 40%를 적용한다.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호주는 주택을 구입할 때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재산세 성격의 토지세(0.4~1.4%)는 내야 한다.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게 특징이다. 뉴질랜드는 양도세가 없다.

한편 중개수수료 체계도 국내와 다르다. 국내에선 매수·매도자 모두 부담을 하지만 미국에선 매도자만 부담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집값의 6% 정도를 매도자가 내야 한다.

〈중앙일보 4/27〉

## 재정 정책

### 日, 공무원 연금 10% 깎는다

일본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주도하는 공무원 쉼어짜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5년간 국가 공무원 5%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 데 이어 퇴직한 공무원(공무원 OB)에 대해서까지 연금을 삭감하고 교직 공무원의 임금도 깎기로 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민간 기업과 공무원 간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기업연금)과 공무원 대상 공제연금(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안을 확정했다.

이달 28일 각의에서 의결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새 연금법 개혁안은 민간 기업 및 독립 행정 법인으로 옮긴 전직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원연금 우대조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우대를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60대 전직 공무원이다.

이들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했다더라도 그 민간기업에서 받는 임금과 기업연금이 월 평균 48만엔이 안될 경우 공무원 시절 가입한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다 받고 있다.

반면 기업의 일반 샐러리맨들은 다른 기업으로 옮길 경우 임금과 새로운 기업의 연금이 28만엔 이하일 경우만 전직장의 연금을 다 받는다. 공무원보다 대우가 좋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이처럼 퇴직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연금의 관(官)우대'를 장기적으로 폐지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퇴직공무원 218만명 중 9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금삭감 폭은 최대 10%에 이를 것이라고 니혼게이 지 신문은 보도했다.

정부는 또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보다 우대받고 있는 공립초·중학교 교원의 급여도 4%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재정자문회의와 관련 부처에서 4월 말부터 논의에 착수해 6월 확정하는 '세출 및 세입 일체 개혁 일정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립초·중학교 교직원 은 약 70만명으로 급여 총액은 연간 5조엔에 달한다.

이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1조 6천억엔에 달해 4% 삭감할 경우 연간 600억엔 가량의 세출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초·중학교 교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약 45만 9천엔으로 지방공무원보다 4% 가량 높은 수준이다.

'고이즈미 개혁'의 오른팔로 불리는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을 중심으로 공무원 정원 삭감 작업도 4월부터 본격화 됐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국가 공무원 수를 현행 65만명에서 5% 줄이기로 확정,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부처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감축에 나선 상태다.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광역자치단체들도 2010년까지 지방공무원 수를 평균 5.3% 줄이는 내용의 정원 감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경제신문 4/23〉

## 【세계는 지금 연금수술 중 - 호주】

### 주식·실물에 투자 高수익...국가가 노후 보장

세계 퇴직연금 시장 4위, 아시아 퇴직연금 시장 1위. 호주는 연금 공화국으로 불린다.

기업연금으로 퇴직 후 삶의 질을 보장한다. 특히 퇴직연금은 기업연금으로 노후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호주 연금시장은 단체연금, 즉 '기업연금+공무원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격인 기업연금은 전체 연금시장의 3분의 2 가량이다.

호주는 지난 92년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했다. 퇴직 후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정부가 지출 부담을 안고 있는 국

민연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력이 담겨 있다.

호주의 연금시장은 가입 의무화 이후 고용주의 부담률을 임금의 3%에서 지난 2002년에는 9%로 늘리고 세제혜택을 주면서 95년 176조원에서 올해 545조원으로 10년 사이 3배로 성장했다. 현재 호주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 98%, 임시직 근로자 72%에 이른다.

호주의 퇴직연금 시장은 과거 20년간 연평균 16% 성장했다. 노동자의 임금 중 퇴직연금에 내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을 받을 때 연간 2만 7천호주달러까지 세금을 감면키로 해 급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이 변동되는 확정기여(DC)형의 비중이 약 85%로 노동자가 받을 연금을 사전에 확정하는 확정급여(DB)형 15%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DB형은 노동자에게 줄 퇴직연금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DC형의 투자 수익률이 좋아 노동자도 DC형을 선호하고 있다.

호주 금융건전성감독청(APRA)에 따르면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 수익률은 과거 20년간 연평균 10.7%로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 3.9%, 연평균 임금상승률 4.4%를 크게 웃돌고 있다.

퇴직연금은 호주 금융계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다주었다. 단체연금 시장 자산이 전체 금융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면서 금융회사들은 자산운용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회사의 존립을 결정짓게 되었다. 이들은 29만 1천여개의 퇴직연금펀드를 유치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의 경계 없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호주는 퇴직연금 운용의 건전성과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도입 초기부터 퇴직연금을 위한 별도의 감독 기구를 설립했다.

호주 건전성 감독기구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gency)는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호주 퇴직연금에 대한 감독은 APRA 외에도 호주증권

투자위원회(ASIC)와 국세청(ATO) 등 3개 기구가 관여하고 있다.

퇴직연금 안전성 개혁방안에는 펀드의 지급 능력과 자금 모집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개혁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퇴직연금 수탁기관들은 별도의 인가를 요구받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산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었다.

APRA는 수탁기관들이 신중하고 건전하게 자산운용에 임하고 있는지, 과도한 리스크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퇴직연금 중 85% 이상이 실적배당형 상품이지만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APRA의 감독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때문이다.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사후 보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호주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93년 도입한 SIS법에서 투자대상을 다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에는 위험성과 다양성, 캐시플로우 등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연금자산이 두 자릿 수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다.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짰다면 이 정도 수익률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채권이나 현금비중은 30%에 불과하고 주식이나 실물 등 '공격적 자산'에 70%를 쏟아붓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선진시장 호주는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안겨준 복지국가 금융시스템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4/20〉

## 美 저소득 커플에 '결혼 보너스' 지급

윈스턴 그레이엄과 손드라 콜리(37)는 자식 4명을 낳고 같이 산 지 20년 만에 결혼식을 올린다. 워싱턴 DC에서 저

소득 커플에게 주는 9천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다. 콜리는 비정부단체에서, 그레이엄은 수위로 각각 일하고 있다. 둘 다 편모슬하에서 자랐다.

콜리는 "직업이 없을 때는 미혼모라 사회복지 지원을 받았지만, 결혼하는 순간 지원이 끊겨 그동안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할 엄두를 못 냈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샘 브라운백은 연간소득 5만달러(약 5,000만원) 이하의 커플이 결혼하면 주택 구입비, 교육비용, 사업확장 등을 위한 '결혼 보너스'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부부가 3년 안에 3,000달러를 모으면 최고 9,000달러를 받게 된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결혼 보너스가 경제적 문제로 결혼하지 않는 커플들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흑인 아동 74%, 전체 아동의 54%가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났다.

'결혼 발전 계좌'로 부부에게 지급되는 돈은 비정부 기구가 관리하게 된다. 현재 연방정부 예산을 포함해 150만달러(약 15억원)가 모였다.

기금을 관리하는 엘레노어 홈즈는 "우리는 단지 결혼만 하면 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4/29〉

## 日 고이즈미 총리 집권 5년... '작은 정부'로 경제 살렸다

"싸움은 인간의 숙명이다."

올해 초 도쿄(東京)의 한 가부키전용극장에서 전국시대의 무장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생애를 그린 '노부나가'를 감상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밝힌 소감이다.

‘싸움꾼’ ‘괴짜’로 불리는 고이즈미 총리가 26일 집권 6년째로 접어든다. 전후 일본의 총리 가운데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에 이은 3번째 장기 집권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호전성과 고집은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과거 어느 때보다 결끄럽게 만든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를 10년이 넘는 긴 불황에서 벗어나게 만든 정치적 동력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다수 일본 국민의 여론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70%는 고이즈미 정권의 실적을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고이즈미 정권의 성과에 대한 항목별 평가에서는 우정 민영화가 44.3%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25.0%인 도로공단 민영화였다.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 민영화에 소매를 건어붙인 것은 공기업인 일본우정공사가 민간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을 빨아들여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압박한다고 봤기 때문.

지나해 기준으로 우정공사의 보유자금은 우편저금 230조엔, 간이보험 120조엔 등 무려 350조엔에 이르렀다. 더구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스타일 때문에 우정공사가 10년 안에 경영파탄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이 뻔히 보였지만 여기에 개혁의 메스를 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정공사 직원들은 물론 정부 관료들도 기득권을 뺏기는 민영화를 탐탁지 않게 여긴 데다 이들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우정족(族)’의 원들까지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지난해 8월의 우정 민영화 관련 법안에 대한 참의원 표결이다. 참의원 의원 233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우정 민영화 관련 법안은 찬성 108표, 반대 125표로 부결되었다. 특히 여당인 자민당의 원 22명마저 반란표를 던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는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로 응수했다. 선거 결과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중의원의석이 개헌 선을 넘어섰다.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해 온 우정 민영화에 성공한 고이즈미 총리는 ‘작은 정부’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10년까지 공무원 수를 5% 감축하고 신분 보장, 급여, 연금 등 각 분야에 걸쳐 공무원의 특혜를 없애거나 줄이며 기득권 집단인 관료들을 향해 개혁의 칼날을 겨누는 것이다.

집권 기간 내내 ‘관(官)에서 민(民)으로’를 외쳐온 고이즈미 개혁의 경제적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뒷받침된다.

일본의 경기는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한 이후인 2002년 2월부터 지금까지 51개월째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경쟁이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자리도 넘쳐나고 있다.

일본 국민은 전후 최장(最長)으로 꼽히는 이자나기 경기(1965년 11월~1970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 ▼ ‘격차 사회’…경쟁 강조하다 소득 양극화-중산층 위정
- ▼ ‘격차(格差)사회’, ‘약육강식’, ‘승자와 패자’.

이 단어들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집권 5주년을 맞는 일본에서 새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전반을 경쟁체제로 개편하는 고이즈미식 구조개혁이 국민 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일본의 안정을 상징하던 ‘1억 중산층’ 구조가 깨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당초 이런 비판은 야당이 제기했으나 이제는 자민당 내에서도 ‘약자를 위한 윤리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이 고이즈미 총리 5년을 맞이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개혁으로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후생노동성이 1월 발표한 지니계수는 2001년 0.47에서

2005년에는 0.50으로 확대되었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심하다는 뜻.

격차사회 문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포스트 고이즈미’ 경쟁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이즈미의 개혁몰이에 놀려왔던 자민당 각 파벌이 9월 총재선거에서 이를 부각시킬 태세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4/26〉

## 獨·佛 ‘유럽경제 부흥’ 투톱 재가동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투톱 체제’를 재가동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올 들어 생산·소비 등 경제지표 회복, 증시 활황, 성장률 전망 상향 등 완전한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유럽경제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유럽경제의 양대 축 부활로 유럽경제가 활기를 띠는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된 독일과 프랑스의 각종 경기 지표들은 양국이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준다. 25일(현지시간)독일의 민간연구소 Ifo가 발표한 4월 기업 신뢰지수는 예상을 뒤엎고 105.9로 상승, 91년 4월 이후 15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4월 물가상승률 역시 전월에 비해 0.2% 상승한 2.0%, 2월 생산증가율도 1%로 올라섰다.

프랑스 경제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프랑스의 3월 기업 신뢰지수는 106으로 17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생산예상지수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25일 경기 상승 탄력을 살리기 위해 인터넷검색엔진, 초현대식 열차, 하이브리드카, 절전형 주택, 휴대폰을 통한 고화질 TV 구현 기술, 새로운 플라스틱 공법 등 6대 하이테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7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에서 20억유로를 증액하기로 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부활은 주식시장에서도 확인된다.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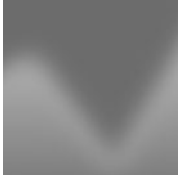
일의 DAX지수는 연초 5,449.38에서 지난 25일 현재 6,078.80 포인트까지 올랐다. 올 들어 넉 달도 안되어 벌써 11.5% 이상 뛴 것이다. 프랑스 CAC40 지수도 4,000 포인트 증반에서 25일 현재 5,235.34포인트로 10.1% 상승했다.

전문가들도 EU의 두 축인 독일과 프랑스경제의 부활로 유럽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분데스뱅크는 이날 월간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낙관론과 만족감이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메릴린치의 이안 스텐하우스 수석이코노미스트도 “프랑스의 경기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호아킨 알무니아 EU 통화담당 집행위원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회복에 힘입어)유럽경제가 분명하고 실질적인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또 성장률 전망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높은 2.0%로 발표했다. IMF는 지난해 9월 유로존의 2006년 성장률 전망을 1.8%로 발표한 바 있다. 독일 경제단체인 BDI도 올해 자국의 성장률을 1월 1.8%에서 지난 24일 2.0%로 상향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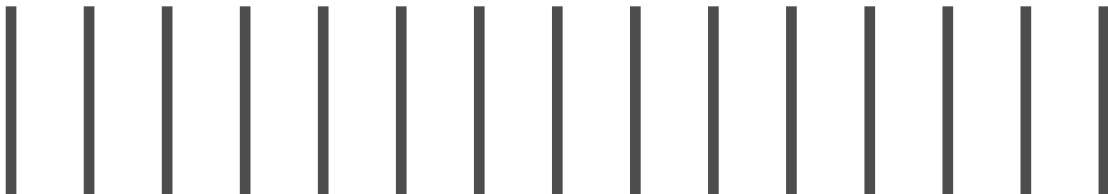
한편 유럽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는 이날 유럽의회에서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가 높아질 위험이 있어 추가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4/26〉



# 정책흐름

1.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2.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새명칭 공모
3. 전국 871만호에 대한 2006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4. 2006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 이 자료는 2006년 5월 10일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I.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06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29위)에 비해 9단계 하락한 38위를 기록

\* 세계 6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통계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 우리의 경쟁국인 아시아 국가들(15개국) 중에는 13위,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30개국) 중에는 16위를 기록

	01	02	03	04	05	06
- 국가경쟁력 순위	29	29	37	35	29	38
· 아시아 국가 중 순위	-	9	10	12	10	13
· 인구2천만명이상 국가 중	-	12	13	15	11	16

□ 4대 분야별로는 경제성과분야에서는 경제지표의 호전세를 반영하여 개선(43→41위) 되었으나,

야는 크게 하락하였으며, 인프라분야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23→24위)

○ 정부효율성(31→47위) 및 기업효율성(30→45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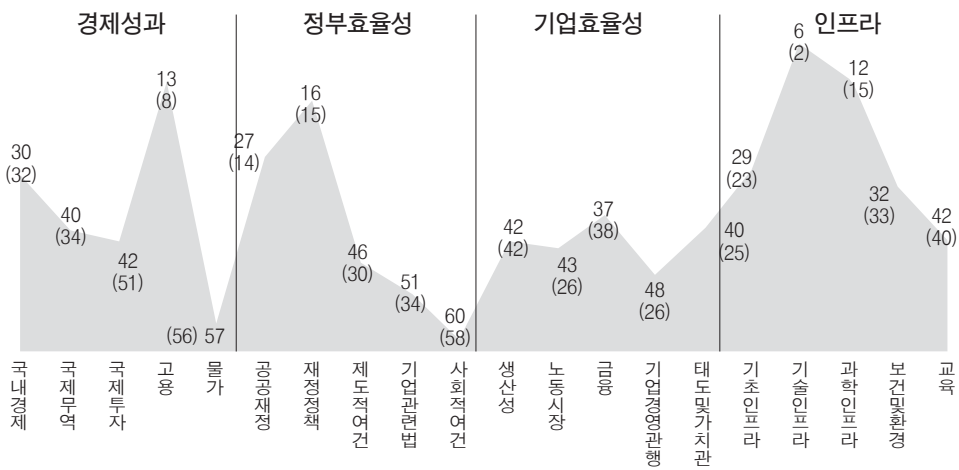
### 〈4대 항목별순위〉

	01	02	03	04	05	06
1. 경제성과	15	32	40	49	43	41
2. 정부효율성	28	26	37	36	31	47
3. 기업효율성	35	27	45	29	30	45
4. 인프라구축	26	23	30	27	23	24

○ 20개 세부분야별로는 경제성과에서는 국내경제 및 국제투자가 개선되었으나,  
 - 정부효율성에서는 공공재정, 제도적 여건, 기업관련법

이 악화되었고  
 - 기업효율성에서는 노동시장, 기업경영관행, 가치관 등에서 악화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형도〉



\* ( )내는 작년순위

□ IMD는 06년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 과제로서 다음사항을 지적

- 기업투자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민간소비증가 유도
-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 한미 FTA 등을 통한 선진개방경제화 노력
- 환율, 유가 등의 변동에 따른 영향 감소 및 양극화의 완화

〈참고〉IMD의 세계경쟁력 평가

- IMD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57년 역사의 MBA School로서 1989년부터 매년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출간하여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
- IMD는 주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얼마나 잘 조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
- \*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므로 기업경영자의 관점이 주로 반영

## II.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상승·하락 요인 분석

◇ 객관적인 통계위주로 평가되는 경제성과 및 인프라 분야는 개선 또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정부효율 및 기업효율분야의 순위가 대폭 하락

\* 4대분야별 평가항목의 설문비중 : 경제성과(11%), 정부효율성(60%), 기업효율성(63%), 인프라(37%)

\* 대표적 개선항목 15개 중 14개가 통계항목이며, 하락항목 15개 중 11개가 설문항목임

◇ 금번 조사시점(2~3월 중순) 감안시, 국가채무논쟁, 양극화 논란, 유가·환율 등의 대외불안요인 및 철도파업이 설문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

### 경제성과 (43→41위: 2↑)

□ (강점과 약점) 장기실업률(1위), 상품수출액(12위) 등이 강점요인이나,

○ 높은 생계비지수(59위), 교역조건(52위), 여행수입(50위) 등은 약점요인으로 작용

강 점	05	06	약 점	05	06
장기실업률	1	1	생계비 지수	56	59
실업률	4	6	교역조건지수	52	52
청년 실업률	13	11	GDP대비 여행수입 비중	49	50
상품수출액	12	12	GDP대비 국내직접투자	32	41
서비스 수출액	15	16	GDP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	34	36

□ (상승·하락항목)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1인당GDP, 소비자물가상승률, 내·외국인 직접투자 등 경제성과지표

### 가 개선

\* IMD가 밝힌 15개 개선항목 중 10개가 경제성과분야

항 목	05년판	06년판	
상 승	- 외국인직접투자액 (십억불)	3.22	8.19
	- 직접투자 (% GDP대비)	0.53	1.20
	- 증권투자 (십억불)	4.33	9.80
	- 장기실업률 (%)	0.10	0.02
	- 해외직접투자액 (십억불)	3.43	4.79
	- 서비스수출액 (십억불)	31.50	40.05
	-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2.7
	- 해외직접투자 (% GDP대비)	0.56	0.70
	- 주식시장유입액 (십억불)	47.63	56.00
	- 1인당 GDP (불)	14,157	16,311
하 락	- 경상수지 (% GDP대비)	4.14	2.10

**정부효율성 (31→47위 : 16↓)**

□ (강점과 약점) 외환보유고, 정부주채규모 등이 강점이나, 이민법제, 차별정도, 보호주의 등 설문지표가 약점

○ 특히, 환율안정성 부문은 05년 2위에서 06년에는 55위로 크게 하락

강 점	05	06	약 점	05	06
GDP대비 정부보조금	4	4	이민법(설문)	53	59
총외환 보유고	4	4	인종·성적 차별 정도(설문)	54	58
소비세율(VAT 등)	5	6	가격통제(설문)	51	57
단기실질이자율	25	9	환율안정성	2	55
GDP대비 정부부채	15	12	보호주의(설문)	35	55

□ (상승·하락항목) 중앙정부의 외국채무, 환율정책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정도, 외환보유고가 개선

○ 그러나, 정부예산적자 및 대부분의 설문조사 항목에서 하락

항 목		05년판	06년판
상 승	- 중앙정부의 해외부채 (% GDP대비)	2.41	1.78
	- 환율정책이 기업경쟁력을 지지하는 정도 (설문)	4.74	5.45
	- 총외환보유액 (금포함, SDR)	128.15	147.17
하 락	- GDP대비 정부보조금 (% GDP대비)	0.06	0.09
	- 정부예산수지 (% GDP대비)	1.05	0.67
	- 보호주의가 기업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 (설문)	6.13	4.21
	- 정부재정운용의 개선정도 (설문)	6.13	4.36
	- 외국인투자유인정도 (설문)	6.45	4.84
	- 정부정책의 수용가능성 (설문)	4.16	3.27
	- 정부정책에서 사회적 응집력의 우선순위 정도 (설문)	6.09	4.86

**기업효율성 (30→45위 : 15↓)**

□ (강점과 약점) 평균근로시간, 주가지수상승률, 세계화에 대한 태도가 강점이나,

○ 설문지표인 노사관계 생산성, 금융전문가 구인용이도, 회계감사관행 등은 최하위 수준

강 점	05	06	약 점	05	06
평균 근로시간	7	7	노사관계 생산성(설문)	60	61
주가지수 상승률	47	9	금융전문가 구인(설문)	46	61
세계화에 대한 태도(설문)	7	13	회계감사관행(설문)	37	58
고객만족도(설문)	4	14	중소기업의 효율성(설문)	50	58
경제사회개혁의 필요성(설문)	11	16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설문)	36	56

□ (상승·하락항목) 주식시장시가총액이 개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 금융전문가 구인용이도, 사회적 가치, 회계감사관행이 큰 폭 하락

항 목		05년판	06년판
상 승	- 주식시가총액 (% GDP대비)	54.17	62.97
하 락	- 금융전문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설문)	5.60	4.26
	- 사회적 가치가 경쟁력을 지지하는 정도 (설문)	6.29	5.05
	- 회계감사관행이 기업경영에 적절한 정도 (설문)	6.58	5.29

**인프라 (23→24위 : 1 ↓)**

□ (강점과 약점) 광역통신망가입자, 특허획득률, 광역통신 비용, 인구부양비율, 고등교육 수확률은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작용

○ 초등학교 1인당 학생수, 엔지니어 구인, 대학교육 경쟁력 등은 여전히 약점요인

강 점	05	06	약 점	05	06
광역 통신망 가입자수	1	1	초등교사1인당 학생수	54	56
R&D 인구대비 특허획득건수	2	2	엔지니어 구인(설문)	45	54
광역 통신비용	2	2	대학교육의 경쟁력(설문)	52	50
인구 부양비율	3	3	기술규제(설문)	30	50
고등교육 수확률	4	4	기술개발·응용 지원(설문)	20	50

□ (상승·하락항목) Hi-tech 수출액은 상승항목으로 작용한 반면 정보통신투자, 엔지니어 구인 등은 하락

항 목		05년판	06년판
상 승	- Hi-tech 수출액 (십억불)	57,161	75,742
하 락	- 정보통신투자 (% GDP대비)	1.32	0.80
	- 자격있는 엔지니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설문)	6.09	4.73
	- 기술공학의 개발과 적용의 법적 지원 정도 (설문)	6.92	5.45
	- 에너지관련 인프라가 효율적인 정도 (설문)	6.94	5.53

### Ⅲ. 평가 및 대응 방향

① 국가경쟁력은 개념상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라 할 수 있는 바, IMD 평가에서는 순위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임

\* 우리나라 순위 : (02)29위→(03)37위→(04)35위→(05)29위  
→(06)38위

② 더욱이, IMD 평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다른 국제평가기관의 평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도 이례적임

○ 골드만삭스는 2010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초과하고, 2025년에는 미국·일본에 이어 3위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05. 12)

○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06. 4)

– 외평채 가산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주요 투자은행들도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관련 긍정적 전망을 제시

③ 이렇듯 IMD 평가가 he 평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평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항목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하락지표(134개)의 66%(88개)가 설문지표

	통 계 지 표			설 문 지 표		
	상승·유지	하 락	계	상승·유지	하 락	계
- 경제성과 (38)	19	15	34	4	0	4
- 정부효율성 (61)	11	10	21	11	29	40
- 기업효율성 (60)	18	4	22	5	35	38
- 발전인프라 (79)	31	17	48	7	24	31
계 (238)	79	46	125	27	88	113

\* ( )내는 전체조사대상항목(312개) 중 순위상정 항목수  
\* 설문조사는 3,000여명으로, 주로 국내거주 내·외국기업인으로 구성

○ 특히, 이번 설문조사의 시점(2~3월 중순)을 감안시, 고유가 및 환율 급락 등 대외불안요인과 함께 국가채무 논쟁·양극화 논란·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 등과 관련된 외국자본 공과 논란, 기업 로비자금 수수관련 회계투명성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큼

– 아이칸의 시도에 맞서는 한국 투자자들 (2. 9, WSJ)  
– 일부 국회위원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저지에 나서 (2. 8, FT)  
– 김재록씨 현대차 로비자금 수수억 수수 (3. 26, 연합뉴스)

<2~3월중 부정적 시각을 담은 주요 헤드라인>

- ‘증세없다’며 돌아서서 세금폭탄 던지기(2. 1, 동아)
- 고유가·환율 불안, 한국경제 버팀목이 흔들린다 (2. 28, 국민)

〈하락을 주도한 설문 항목 예시〉

- ① 보호주의가 기업영역을 저해하고 있는가?  
(35→55: 20 ↓)  
- 룬스타 등 해외자본의 막대한 매매차익 향유로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외자정서가 보호주의 강화로 비취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계약체결 지연 등 경영상 애로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② 공공채정관리가 개선되고 있는가?(17→52: 35 ↓)  
- 국가채무 및 감세논쟁 등이 이어지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대한 의문 증폭
- ③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정책의 수용성이 높은가?  
(31→48: 17 ↓)  
-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유가·환율 등 대외적인 외생변수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④ 회계감사가 기업에서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37→58: 21 ↓)  
- 작년 이후 나타난 두산·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들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⑤ 사회적 응집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인가?  
(34→48: 14 ↓)  
- 기업인들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논란을 접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⑥ 외국 노동자의 취업금지 관련법률 (53→59: 6 ↓)  
- 04.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전환되는 과도기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점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분석

(천명) 외국인인력 취업비자 연수비자 불체자

04	421	197	36	188
05	345	126	38	181

- ④ 다만, 금번 IMD 세계경쟁력 평가에서도 국가경쟁력의 보다 근본적인 부분인 Fundamental이 양호하다고 평가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임  
○ 경제성과는 금년에도 2단계 상승한 41위를 기록하는 등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이며, 인프라 분야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 ⑤ 따라서, 금번 결과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부분은 양호하지만, 그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이 다소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
- ⑥ 정부는 앞으로 개방과 규제완화,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 특히, 기업인들의 인식이 조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노력을 기울이는 등 쌍방향 대화 노력을 강화

## 〈참고 1〉 '05년 대비 상승 및 하락 주요 항목

### □ 개선 요인

개 선 요 인	05년판	06년판
- 외국인직접투자액(십억불)	3.22	8.19
- 직접투자(% , GDP대비)	0.53	1.20
- 증권투자(십억불)	4.33	9.80
- 장기실업률(%)	0.10	0.02
- 해외직접투자액(십억불)	3.43	4.79
<hr/>		
- Hi-tech 수출액(십억불)	57,161	75,742
- 서비스수출액(십억불)	31.50	40.05
- 중앙정부의 해외부채(% , GDP대비)	2.41	1.78
-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7
- 해외직접투자(% , GDP대비)	0.56	0.70
<hr/>		
- 주식시장유입액(십억불)	47.63	56.00
- 주식시가총액(% , GDP대비)	54.17	62.97
- 1인당 GDP(불)	14,157	16,311
- 환율정책이 기업경쟁력을 지지하는 정도(설문)	4.74	5.45
- 총외환보유액(금포함, SDR)	128.15	147.17

### □ 하락 요인

하 락 요 인	05년판	06년판
- GDP대비 정부보조금(% , GDP대비)	0.06	0.09
- 경상수지(% , GDP대비)	4.14	2.10
- 정보통신투자(% , GDP대비)	1.32	0.80
- 정부예산수지(% , GDP대비)	1.05	0.67
- 보호주의가 기업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6.13	4.21
<hr/>		
- 정부재정운용의 개선정도(설문)	6.13	4.36
- 외국인투자유인정도(설문)	6.45	4.84
- 금융전문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설문)	5.60	4.26
- 자격있는 엔지니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설문)	6.09	4.73
- 기술공학의 개발과 적용의 법적 지원 정도(설문)	6.92	5.45
<hr/>		
- 정부정책의 수용가능성(설문)	4.16	3.27
- 에너지관련 인프라가 효율적인 정도(설문)	6.94	5.53
- 정부정책에서 사회적 응집력의 우선순위 정도(설문)	6.09	4.86
- 사회적 가치가 경쟁력을 지지하는 정도(설문)	6.29	5.05
- 회계감사관행이 기업경영에 적절한 정도(설문)	6.58	5.29

## 〈참고 2〉 다른 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 ◇ 미국이 05년에 이어 1위를 차지 하였으며, 홍콩·싱가포르·아이슬란드가 뒤를 이음  
 ◇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상승하였고, 태국 등은 하락

국가/지역	05	06	국가/지역	05	06
미국	1	1	체코	36	31
홍콩	2	2	태국	27	32
싱가포르	3	3	중국 저장	20	33
아이슬란드	4	4	스페인 카탈로니아	32	34
덴마크	7	5	프랑스	30	35
호주	9	6	스페인	38	36
캐나다	5	7	인도 마라슈트라	42	37
스위스	8	8	한국	29	38
룩셈부르크	10	9	슬로바키아	40	39
핀란드	6	10	콜롬비아	47	40
아일랜드	12	11	헝가리	37	41
노르웨이	15	12	그리스	50	42
오스트리아	17	13	포르투갈	45	43
스웨덴	14	14	남아공	46	44
네덜란드	13	15	슬로베니아	52	45
독일바바리아	18	16	요르단	44	46
일본	21	17	불가리아	-	47
대만	11	18	브라질 상파울로	43	48
중국	31	19	필리핀	49	49
에스토니아	26	20	이탈리아 롬바르디	41	50
영국	22	21	터키	48	51
뉴질랜드	16	22	브라질	51	52
말레이시아	28	23	멕시코	56	53
칠레	19	24	러시아	54	54
이스라엘	25	25	아르헨티나	58	55
독일	23	26	이탈리아	53	56
벨기에	24	27	루마니아	55	57
프랑스 일드프랑스	33	28	폴란드	57	58
인도	39	29	크로아티아	-	59
영국 스코틀랜드	35	30	인도네시아	59	60
			베네주엘라	60	61

※ 05년 60개에서 06년에는 6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프랑스 룬알프스 제외, 불가리아·크로아티아 추가)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새명칭 공모

※ 이 자료는 2006년 5월 4일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에서 발표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새명칭 공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재정경제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06년 5월8일(월)~22일(월) 15일간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를 통해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공모합니다.
- 제출방법 :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제출, E-Mail (sy94@mofe.go.kr, eun8372@mofe.go.kr), 또는 팩스이용(fax:02-503-9058)
- 결과 발표 : '06. 6월초
- 상금 : 최우수작(1인) 100만원, 우수작(1인) 50만원,佳作(1인) 20만원

- 정부는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일을 통해 번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공제액을 지원하는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근로소득지원세제’라는 명칭은 생소하여 제도도입 취지와 의미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이번 공모를 통하여 보다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 명칭이 제정되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참고>

#### 근로소득지원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란 무엇인가

#####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어떤 제도인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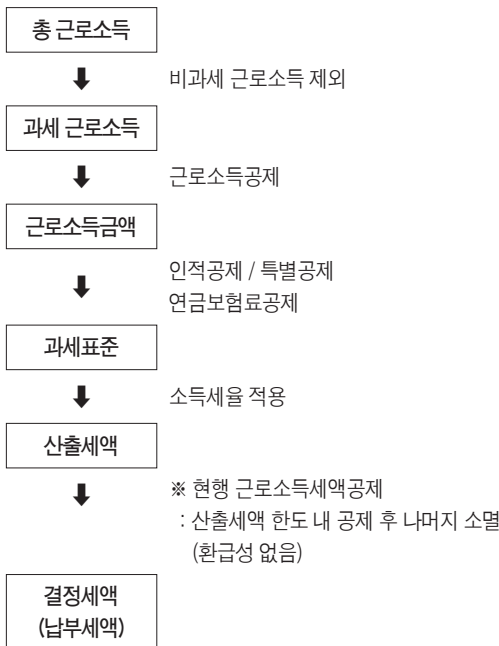
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EITC 급여액(공제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EITC 급여액(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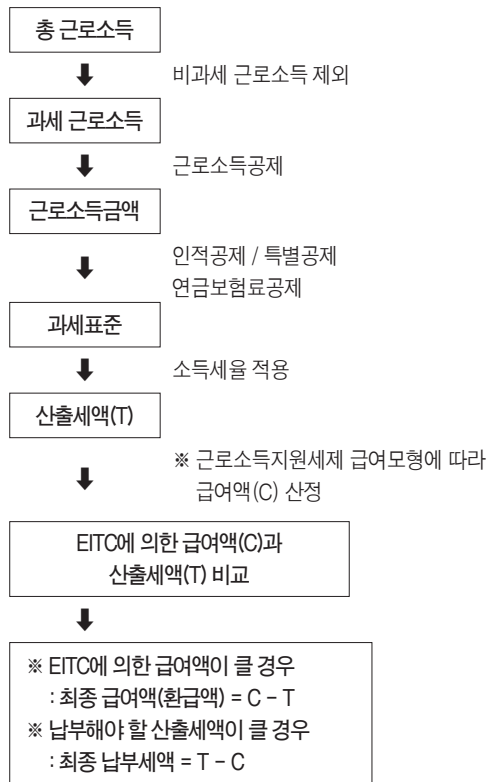
는 급여모형에 의해 설정된 EITC 급여액(공제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받는 데 그치지 않고 EITC 급여액(공제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EITC 급여액(공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행 소득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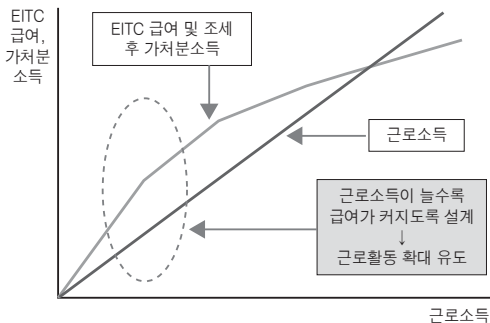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 이후 소득세체계]



###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도입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최근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빈부 격차도 심화되고 있으나, 근로빈곤층의 대부분은 국민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빈곤상태를 완화시키거나 빈곤화를 예방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 기대된다.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급여를 많이 지급하도록 운영되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활동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운영되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득과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

장제도를 비롯하여 국민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소득과약과 관련된 신뢰성 및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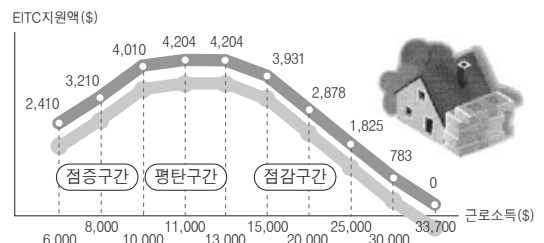
###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 근로소득지원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EITC의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미국의 중추적인 복지제도로 위상이 높아진 것은 1993년 클린턴 정부 이후이다.

미국의 EITC 제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개별 가구의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EITC 급여액(공제액)이 산정된다.

#### <미국의 근로소득구간별 EITC 지급액 예시>

(2003, 아동 2명인 가구)



자료: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미국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71년부터 유사한 형태의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블레어 정부는 1998년 이 제도를 조세 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 제도로 전환하였고, 2003년에는 아동 관련 지원

〈이동 2인 이상인 가구의 예〉

점증 구간 (phase-in range)	근로소득 \$0~\$10,510 정률방식. 약 40%의 급여증가를 적용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 증가
평탄 구간 (plateau range)	근로소득 \$10,510~\$13,730 (\$10,510~\$14,730) 정액방식으로서 급여액은 최대 급여액 \$4,204 근로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급여 일정
점감 구간 (phase-out range)	근로소득 \$13,730~\$33,692 (\$14,730~\$34,692) 정률방식. 약 21%의 급여감소를 적용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 감소 근로소득 \$33,692 (\$34,692)에서 급여액 0

※ ( )안은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제도들을 정비하여 CTC(Child Tax Credit)와 WTC(Working Tax Credit)를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조스팽의 좌파내각이 2001년 고용으로의 복귀와 근로활동 유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제도로 PPE(Prime Pour l'Emploi)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라파랭이 이끄는 우파내각이 이 제도를 계승하여 시행 중이다.

# 전국 871만호에 대한 2006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국 평균 16.4% 상승)

※ 이 자료는 2006년 4월 27일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서 발표한 「전국 871만호에 대한 2006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국 평균 16.4% 상승)」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 ▶ 1억원 미만(전체의 67%, 582만호) 중저가 공동주택은 평균 8.6% 상승

건설교통부는 '06. 1. 1 기준으로 전국 약 871만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을 4월 28일 공시한다.

이번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하여 지역별 가격균형협의회, 주택소유자 열람,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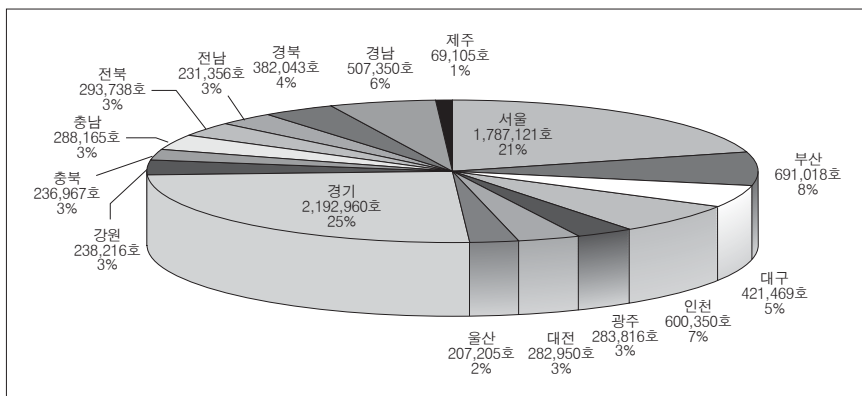
<공시절차> ①가격조사→②지역별가격균형협의회→③열람 및 의견청취 →④중부위 심의→⑤가격결정·공시→(6)이의신청→(7)이의신청 처리

## ① 공시대상 주택 현황

'06년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전국의 아파트 688만호, 연립 45만호, 다세대 138만호 등 총 871만호로 전년 대비 45만호가 증가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53% (458만호)이고, 지방이 47%(413만호)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가 88.5% (7,720,519호)로 대부분이고, 85㎡(25.7평) 초과는 11.5%(993,310호)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33㎡이하	33㎡초과~50㎡이하	50㎡초과~60㎡이하	60㎡초과~85㎡이하	85㎡초과~102㎡이하	85㎡초과~102㎡이하	102㎡초과~165㎡이하	165㎡초과
	10평 이하	10평~15평	15평~18평	18평~25.7평	25.7평~30평	30평~41평	41평~51평	51평 초과
세대수 8,713,829	389,422	1,756,513	2,364,068	3,210,516	234,831	562,656	136,288	59,535
구성비	4.5%	20.2%	27.1%	36.7%	2.7%	6.5%	1.6%	0.7%

## ② 공시가격 산정과정 및 신뢰성 제고 노력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 및 조사자 554 명이 참여하여 '05. 9부터 '06. 3까지 현장조사(주택특성조사, 가격자료 수집 등), 가격형성 요인 및 지역분석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3. 17~4. 6일까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조사·산정을 실시한 후 4. 25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 28일 가격을 공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77일→130일)하고, 전국적인 가격균형을 위해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단계 지역별 가격균형협의회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도출함으로써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 아파트 단지 사진촬영, 등기부등본 등 공부대조 확인 및 검증

또한 한국감정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조사상황을 일

일점검하고, 실시간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3. 15~6. 14) 하여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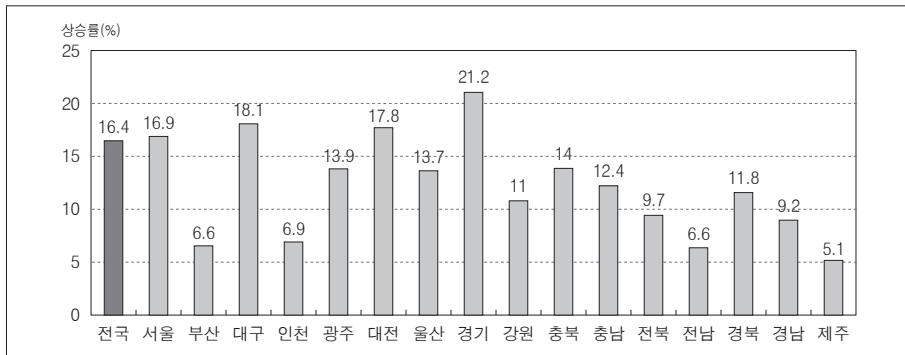
## ③ '0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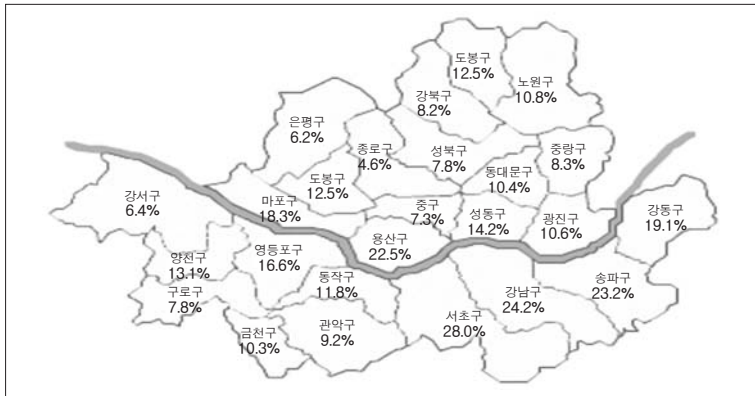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가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산정된 적정시가의 80% 수준으로 공시한 결과 “총가액 기준”으로 '05년 대비전국 평균 16.4%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은 18.0%, 광역시는 12.9%, 시·군은 10.4% 상승하였다.

※ KB와 같은 “호별 상승률 산술평균” 식으로 산정시 전국 평균 7.8% 상승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2%로 최고, 서울 16.9%, 대구 18.1%가 상승하였으며, 제주가 5.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강남지역(19.5%)은 강북지역(11.9%)보다 높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서초 28.0%, 강남 24.2%, 송파 23.2%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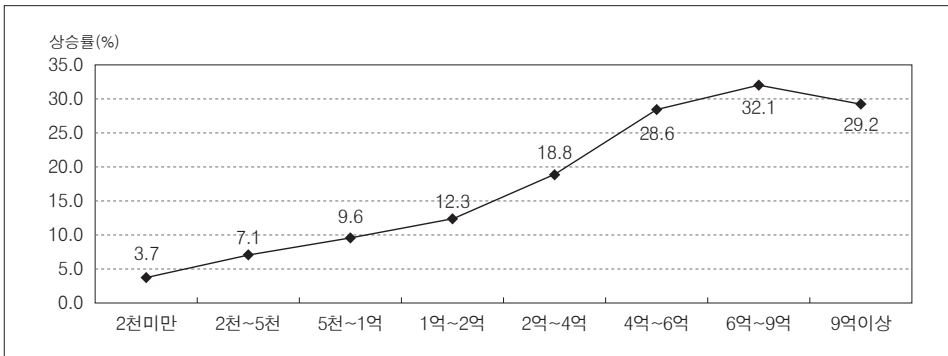




신도시 지역의 상승률은 23.8~39.1%로 상승률이 높으며, 특히 분당이 39.1%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구 분	분 당	일 산	평 촌	과 천	산 본
상승률	39.1	23.8	30.2	28.4	29.2

가격수준별로는 1억원 미만 주택(582만호 67%)은 평균 8.6%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6억원~9억원 주택은 평균 32.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중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40,740호로 수도권에 99.7%인 140,329호(전체의 1.6%)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411호에 불과함

지역별로는 서울이 77.8%(109,456호)이며, 그 중 강남(40,485호), 서초(28,044호), 송파(21,308호)가 대부분을 차지, 분당 24,380호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대 전	경 기	충 남
140,740	109,456	190	197	146	20	30,727	4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0.5%

#### ④ 공동주택 종류별 최고 공시가격 현황

공동주택중 최고가는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 230평형 40억원이며, 최저가는 전남 고흥 도양 봉암리 다세대 5평형 100만원이다.

유형별	평형	최고가	소재지
아파트	104	39억9천2백만원	서울 강남 삼성 아이파크
연립	230	40억원	서울 서초 서초 트라움하우스5
다세대	84	16억2천4백만원	서울 강남 청담

#### 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 1~31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 31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Fax), 우편 및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산정과정 검수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 6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⑥ 공시가격의 활용

지난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올해부터 이번에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으로 바뀌게 되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 재산세는 7월과 9월 1/2씩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부과

#### 《개별주택(단독주택)가격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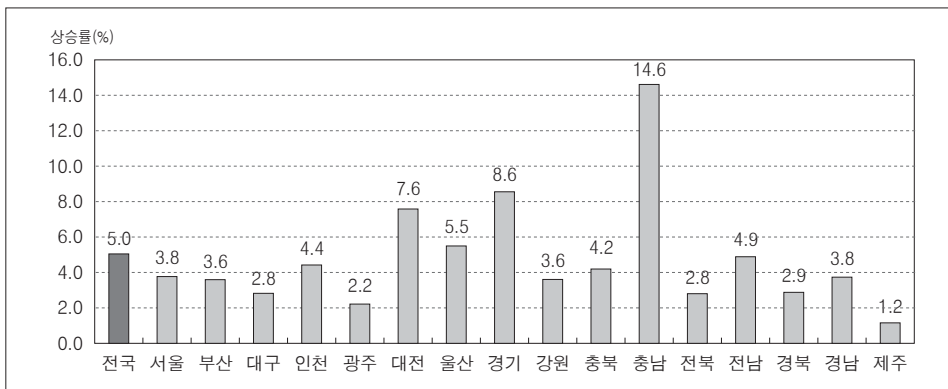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약 430만호에 해당하는 개별주택(단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 28일 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1. 31)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것이다.

#### ① '06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개별주택가격은 “추가액 기준”으로 전국 평균 5.05%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5.5% > 시·군 4.8% > 광역시 4.0% 상승하였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14.6%로 가장 높고, 제주가 1.2%로 가장 낮으며, 서울은 3.8%로 상승률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다.



중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7,443(전체의 0.4%)호로 수도권에 97.7%인 17,048호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395호이다.

단독주택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85억 2천만원이며, 최저가는 경북 포항 북구 신광면 토성리 소재 주택으로 10만 7천원이다.

### ② 개별주택(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 1~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 3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정밀 재조사·산정과 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 6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③ 개별주택(단독) 공시가격의 활용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 문답자료(Q&A)

### 1. 주택 유형에 따라 공시주체는?

○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공동주택〉①감정원 가격조사→②공동주택가격협의회→③열람 및 의견청취→④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⑤가격결정·공시→(6)이의신청→(7)이의신청 처리

〈단독주택〉①표준주택가격 공시(건교부)→②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③열람 및 의견청취→④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⑤가격결정·공시→(6)이의신청→(7)이의신청 처리

○ 공동주택은 단기간내 가격 변동이 심하여 비준표 작성이 어렵고 집단화·규격화되어 있어 전수조사 방식이 적합하며,

- 단독주택은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아 대표성이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평가 후 비준표를 적용하여 시·군·구에서 가격을 산정

###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매년 1. 1일 기준으로 4. 30일까지 공시

-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1. 1~5. 31 발생한 경우에는 6. 1일을 기준으로 9. 30일까지, 6. 1~12. 31 발생한 경우에는 1. 1일을 기준으로 4. 30일까지 가격을 공시하게 됨

### 3.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됨

- 재산세 과표는 주택공시가격의 50%, 중부세는 70%
-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부과
- 과표외에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함

**4. 동일단지내 동일평형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호별로 전수조사하여 산정하므로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호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음.

**5.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며,  
 -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  
 ⇒ 제출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이의신청에 의해 정정되는 주택가격은 4. 28일로 소급하여 적용

**6.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세부담만 증가하지 않는가?**

- 1억원 미만 중저가주택(전체 공동주택의 67%, 582만호)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8.6%로 낮아 서민의 조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30.5% 상승
- '06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보유세는 부산 해운대 J아파트 24평형의 경우 '05년에 비해 8천원(8.6%)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주택의 보유세 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강남 I아파트 59평형의 보유세는 1,132만 7천원(173%)이 오를 것으로 나타나 고가아파트의 보유세는 상당수준 상승 예상

단지 정보		공시가격(천원)		공시가격 상승률 (%)	보유세 (천원)			보유세상승률 (%)
소재지	평형	'05년	'06년		'05년	'06년	증가액	
부산 해운대 J	24	56,500	61,000	8.0	93	101	8	8.6
서울 강남 I	59	1,416,000	1,888,000	33.3	6,546	17,873	11,327	173.0

《J아파트》

⇒ 지방세(재산세 45,750 + 지방교육세 9,150 + 도시계획세 45,750) + 국세(중부세 0 + 농특세 0) = 100,650원

《I아파트》

⇒ 지방세(재산세 4,460,000 + 지방교육세 892,000 + 도시계획세 1,416,000) + 국세(중부세 9,254,000 + 농특세 1,850,800) = 17,872,800원

참 고 자 료

1. 공동주택 유형별 분포현황

지 역	전체(천호)	아파트	다세대	연립
전 국	8,714	6,882	1,382	450
서 울	1,787	1,204	459	124
부 산	691	554	107	30
대 구	422	361	50	11
인 천	600	389	193	18
광 주	284	272	6	6
대 전	283	242	33	8
울 산	208	178	22	8
경 기	2,193	1,710	367	116
강 원	238	210	9	19
충 북	237	213	10	14
충 남	288	244	27	17
전 북	293	271	10	12
전 남	232	214	6	12
경 북	382	325	35	22
경 남	507	457	28	22
제 주	69	38	19	12

2. 공동주택 규모별 분포현황

지 역	전체(천호)	50㎡이하	50㎡초과 85㎡이하	85㎡초과 165㎡이하	165㎡초과
전 국	8,714	2,146	5,575	934	59
서 울	1,787	422	1,053	287	25
부 산	691	158	453	75	5
대 구	422	75	300	44	3
인 천	600	232	325	42	1
광 주	284	54	201	28	1
대 전	283	61	182	39	1
울 산	208	38	159	11	0
경 기	2,193	527	1,369	278	19
강 원	238	76	148	13	1
충 북	237	76	149	12	0
충 남	288	92	179	17	0
전 북	293	75	197	20	1
전 남	232	61	162	9	0
경 북	382	84	279	18	1
경 남	507	97	372	37	1
제 주	69	18	46	5	0

### 3. 공동주택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단위: 호)

가격수준별	전 체		아파트	연 립	다 세 대
	호 수	구성비(%)			
계	8,713,829	100.0	6,882,357	449,741	1,381,731
~2천만원 미만	594,000	6.8	295,986	78,880	219,134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2,716,564	31.2	1,757,430	196,602	762,532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512,153	28.8	2,056,866	113,632	341,655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1,728,098	19.8	1,637,338	37,876	52,884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6,009	9.3	787,036	13,809	5,164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212,028	2.4	206,376	5,406	246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02,448	1.2	99,472	2,892	84
9억원 이상	42,529	0.5	41,853	644	32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40,740호로 전체의 1.6%를 차지

### 4.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5개

#### 가. 전 체

(단위: 천원)

순위	소재지	단지명	평형	공동주택가격
1	서울 서초 서초	트라움하우스5	230	4,000,000
2	서울 강남 삼성	아이파크	104	3,992,000
3	서울 서초 서초	트라움하우스3	180	3,280,000
4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1	102	3,165,000
5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2	101	3,116,000

#### 나. 아파트

(단위: 천원)

순위	소재지	단지명	평형	공동주택가격
1	서울 강남 삼성	아이파크	104	3,992,000
2	서울 서초 서초	트라움하우스3	180	3,280,000
3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1	102	3,165,000
4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2	101	3,116,000
5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3	103	2,880,000

다. 연립

(단위: 천원)

순위	소재지	단지명	평형	공동주택가격
1	서울 서초 서초	트라움하우스5	230	4,000,000
2	서울 서초 양재	신동아빌라C	89	1,968,000
3	서울 서초 양재	신동아빌라B	89	1,936,000
4	서울 강남 삼성	현대빌라	88	1,696,000
5	서울 서초 양재	신동아빌라D	88	1,560,000

라. 다세대

(단위: 천원)

순위	소재지	단지명	평형	공동주택가격
1	서울 강남 청담	(89-11)	84	1,624,000
2	서울 강남 청담	(93-0)	96	1,602,000
3	서울 강남 압구정	(521-0)	71	1,573,000
4	서울 강남 논현	(265-3)	122	1,320,000
5	서울 용산 한남	(11-270)	118	1,263,000

5. 주요 관심 아파트단지 공시가격 변동률

소재지		단지명	'05년 기준 시가 총액 (백만원)	'06년 공시 가격 총액 (백만원)	세대수	평당 가격 (천원)	변동률 (%)
서울	강남	대치 선경1차	596,560	742,780	644	26,096	24.5
		개포 주공1	1,774,126	2,409,140	5,040	32,457	35.8
		도곡 타워팰리스1	1,614,618	2,080,879	1,297	23,965	28.9
		대치 은마	2,029,914	2,670,165	4,424	18,727	31.5
		대치 동부센트레빌	981,360	1,233,225	805	28,891	25.7
		대치 우성	271,921	344,564	476	19,806	26.7
		대치 청실1차	565,863	726,286	1,090	19,007	28.4
		삼성 아이파크	637,605	858,432	449	30,019	34.6
		압구정 구현대1	573,706	870,144	660	25,051	51.7
		압구정 한양4	221,435	292,924	286	22,206	32.3
	서초	반포 반포	1,541,054	1,961,008	2,100	25,836	27.3
		서초 삼풍	1,482,288	1,872,015	2,390	16,958	26.3
		서초 아크로비스타	714,509	900,903	757	18,578	26.1

### 5. 주요관심 아파트단지 공시가격 변동률(계속)

소재지			단지명	'05년 기준 시가총액 (백만원)	'06년 공시 가격총액 (백만원)	세대수	평당 가격 (천원)	변동률 (%)
서울	송파	가락	시영1	1,014,060	1,322,020	03,600	24,835	30.4
		문정	올림픽훼밀리	1,617,840	2,336,880	4,494	17,829	44.4
		신천	장미1	930,248	1,307,819	2,100	16,420	40.6
		잠실	주공5	1,983,049	2,954,228	3,930	21,582	49.0
		잠실	아시아선수촌	1,395,926	1,571,610	1,356	21,856	12.6
	양천	목	목동신시가지1	812,311	940,236	1,882	14,292	15.7
마포	염리	마포자이	228,287	262,202	534	12,236	14.9	
성동	하왕십리	풍림아이원	161,237	187,851	758	8,547	16.5	
도봉	창	삼성래미안	234,767	276,970	1,668	5,399	18.0	
광진	중곡	중곡1단지	10,631	12,156	150	4,944	14.3	
경기	분당	서현	삼성	380,562	543,696	817	13,891	42.9
		수내	양지마을(청구)	394,331	585,190	896	14,134	48.4
		정자	현대-PARK1	346,676	488,990	540	15,696	41.1
		정자	파크뷰	1,315,359	1,854,381	1,829	19,249	41.0
	안양	평촌	꿈마을우성	138,125	208,380	422	10,807	50.9
		평촌	삼성래미안	85,388	112,982	535	6,825	32.3
		평촌	귀인현대홈타운	211,867	287,612	967	9,457	35.8
		호계	목련두산	157,789	228,842	440	11,758	45.0
	과천	부림	주공8	466,684	548,902	1,400	13,496	17.6
		원문	주공2	325,710	454,528	1,370	23,819	39.6
일산	마두	백마마을(삼성)	272,912	393,190	772	11,422	44.1	
	주엽	강선마을(우성)	150,280	205,024	412	10,695	36.4	
	중산	산들마을2(대림)	186,420	233,983	692	7,111	25.5	
	대화	대화마을한라	152,138	187,994	460	7,974	23.6	
용인	수지	LG빌리지3	470,708	799,656	1,234	9,903	69.9	
	수지	신봉엘지자이1	516,886	870,330	1,990	10,229	68.4	
광역시	부산진	부암	화승삼성	171,894	179,959	1,810	3,202	4.7
	광주서	치평	현대	51,098	55,914	484	3,000	9.4
		풍암	동부센트레빌	94,930	114,011	804	3,430	20.1
	울산남	신정	현대	19,204	23,165	252	3,347	20.6
		신정	남산포스코	46,473	53,640	263	4,893	15.4
	대전서	둔산	한마루	269,526	311,560	1,400	6,171	15.6
인천 부평	삼산	주공그린빌6	141,479	148,692	784	5,747	5.1	
대구 수성	만촌	만촌우방타운1단지	172,728	198,432	1,224	4,161	14.9	

# 2006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이 자료는 2006년 4월 28일 재정경제부 공자위사무국 의사총괄과에서 발표한 「2006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 공적자금 지원·회수

□ '97. 11~'06. 3월중 공적자금은 총 168.3조원 지원하였으며, 이 중 77.1조원 회수

⇒ '06. 3월말 현재 회수율(누계)은 45.8%(전월말 대비 0.5% 증가)

※ 04말 42.6%, 05말 45.3%, 06. 2월말 45.3%

□ '06년 3월중에는 357억원 지원, 8,507억원 회수

○ 지원내역 : 매각 후 사후손실보전 315억원,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순자산부족분 지원 39억원 등(예보)

- 한투, 현투증권 소송 등에 따른 사후손실보전 315억원 지원

-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조일, 제이원, 동원 등 6개 저축은행에 39억원 지원

※ 공적자금 지원은 '02년말 이전 사유발생분에 한함

○ 회수내역 : 유상감자 5,456억원, 자산매각 444억원, 출

연금정산 440억원, 부실채권 매각 472억원 등

- (예보) 서울보증보험 유상감자 금액 5,456억원 수령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06. 1. 16), 서울보증보험 주주총회 결의('06. 1. 27)

- (예보) 한투증권, 제일은행 매각 관련 인수자가 매입을 거절하여 매입한 자산의 매각대금 444억원, 소송확정 등에 따른 사후 정산금 440억원 수령

- (캠코) 변제계획에 따른 회수 등 부실채권 매각 472억원(주대우인터내셔널 220억원, 주대우건설 64억원, 주대우 39억원 등)

- (정부) 배당금 수령(산업은행 1,542억원, 수출입은행 81억원)

## 2. 공적자금 상황

□ '06년도 1~3월중 만기가 도래한 정부보증예보채 10.9조원(원금기준)을 정부출연 3.8조원, 차환 2.9조원, 회수자금 등으로 총당

〈06년도 정부보증예보채 만기도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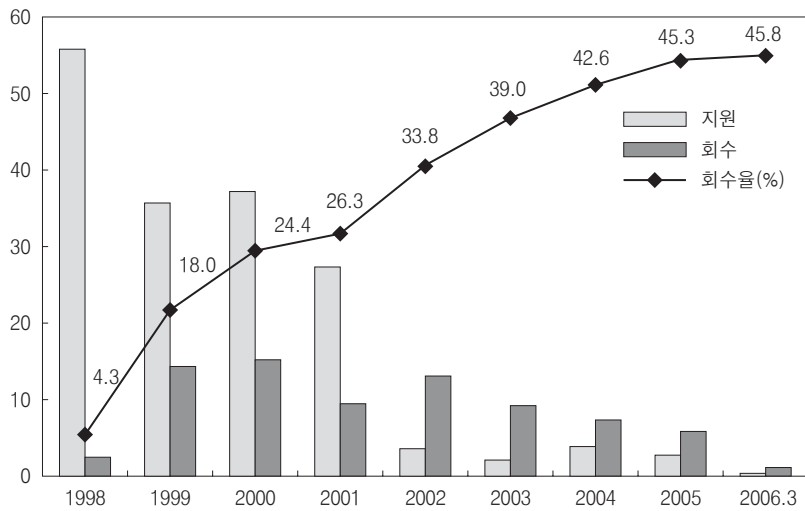
(원금기준,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12월	계
만기도래	2.3	4.4	4.2	2.1	1.1	0.5	4.5	19.0

〈참고〉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1~3	계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168.3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1.1	77.1
회수율(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45.8	45.8



<참 고>

공적자금 통계자료

1. 공적자금 지원현황

가. 재원별

('97. 11월~'06. 3월말, 단위: 조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채 권 발 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 수 자 금	7.6	3.0	7.4	6.5	17.4	42.0
공 공 자 금	13.6	-	-	6.3	-	19.9
기 타 자 금 <sup>주)</sup>	0.03	0.2	2.9	0.1	1.1	4.3
계	63.5	18.4	30.3	17.1	39.0	168.3

주: 예보·자산관리공사의 기금적립금 등 자체조달 재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임

나. 금융권별

('97. 11월~'06. 3월말, 단위: 조원)

금 용 권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융권	종 금	2.7	0.7	18.3	-	1.5	23.2
	증권·투신	10.9	0.3	0.01	1.7	8.5	21.3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8	-	-	4.8
	저축은행	-	0.3	7.3	0.6	0.2	8.4
	소 계	29.5	4.5	30.3	2.7	12.0	79.0
해외금융기관 등	-	-	-	-	2.4	2.4	
계	63.5	18.4	30.3	17.1	39.0	168.3	

### 다. 기관별

(’97. 11월~’06. 3월말, 단위: 조원)

기 관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4	30.3	10.8	-	110.3
자산관리공사	-	-	-	-	39.0	39.0
정 부	11.8	-	-	6.3	-	18.1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4	30.3	17.1	39.0	168.3

### 라. 연도별

(’97. 11월~’06. 3월말, 단위: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1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1월	-	0.26	-	0.26
	2월	-	0.05	△0.05	0.01
	3월	-	0.04	-	0.04
	계	-	0.35	△0.05	0.31
누 계	102.1	42.0	19.9	4.3	168.3

## 2. 공적자금 회수현황

### 가. 총괄표

('97. 11월~'06. 3월말, 단위: 조원)

구 분	회 수 방 법						소 계
	출자금 회수	파산 배당등	자산 매각등				
예금보험 공사	11.5	16.2	5.1	-		-	32.8
	1.6	5.0	2.1	12.1	5.0	10.3	36.1
정 부	1.6	6.6	-		-		8.2
	계						77.1

### 나. 연도별

('97. 11월~'06. 3월말, 단위: 조원)

연 도	예 금 보 험 공 사				자 산 관 리 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회수	파산배당등	자산매각등	소 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	3.6	2.1	0.1	5.8	
2006년	1월	-	0.03	-	0.03	0.02	-	0.05
	2월	0.02	0.01	0.04	0.07	0.09	-	0.15
	3월	0.55	0.05	0.04	0.64	0.05	0.16	0.85
	계	0.57	0.09	0.09	0.74	0.15	0.16	1.05
누 계	11.5	16.2	5.1	32.8	36.1	8.2	77.1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 오도된 상속세 폐지론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세간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상속과 세 강화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먼저 이런 주장은 결만 비교한 점에서 잘못됐다. 상속세 폐지 국가들 중에는 대신 상속재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철저한 소득과세 또는 재산보유에 대한 부유세를 과세하고 있다. 게다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상속세 영구폐지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빌게이츠나 조지 소로스 등 대표적 재산가들이 부자의 사회적 책임, 상속세 폐지때 부와 권력의 집중, 빈부 격차 심화 등을 이유로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는 '이중과

세'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근로소득세를 부담한 소득으로 저축을 하고 집을 구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저축의 이자소득세와 주택의 양도소득세도 이중과세가 된다.

셋째, 정부가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이유는 재벌들의 편법적인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율 인상처럼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완전포괄주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미 시행하는 제도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최고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대다수 국민은 부담이 없다.

또한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세금도 최장 15년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어 상속세가 경제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과도한 상속세로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하여 세금을 회피하

기 위한 각종 편법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늘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창업자의 2세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낸 후 주주나 시장을 통해서 경영능력을 검증받아 경영권이 승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상속세 폐지주장은 잘못투성이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

(2006년 5월 12일자 서울신문 발언대)

### 한·미 FTA가 약이되려면 ...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교역·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하면서 상호 간의 의미 있는 경제관계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한·미 간 전략적 제휴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한국이 미국에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임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도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의 성공이 한국에 가져다줄 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에 본 협상이 시작되면 한국은 국내외 다양한 이해의 상충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첫 번째 도전은 미국이 만만치 않은 협상 상대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15개국과 FTA를 맺었다. 지금도 5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미국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능숙하게 활용할 것이란 점을 한국은 명심해야 한다.

FTA에 숙련된 식견이 있는 미국의 산업계가 협상 과정 내내 정부와 밀접하게 협조한다는 점도 잘 지켜봐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런 '민관 제휴'를 통해 자칫 부족하기 쉬운 현장감각과 생생한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법적·정치적 쟁점을 훤히 꿰뚫고 있는 민간 통상 전문가들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도 이제부터라도 한국 정부에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각종 법적·정치적 쟁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국 경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들의 협상전략을 감시·예상하는 것도 업계의 몫이다.

두 번째 도전은 시간적 제약이다. 의회가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수정 없이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무역촉

진법(TPA)은 2007년 7월 1일 만료된다. 그러나 사전에 3개월간의 심의 기간을 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은 2007년 3월 중순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모든 협상을 끝내야 하는 만큼 한국 정부와 업계는 협상 초기부터 손발을 맞춰가며 협상 진도에 따라 발 빠르게 상호 조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업계 스스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를 연구하고, 미국 측의 관심 사안, 대응 방안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세 번째 도전은 '정치적 기상도'의 변화 가능성이다.

한·미 FTA를 미 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영향력은 중동 정세 불안과 공화당 인사들의 잇따른 스캔들 등으로 점점 빛이 바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역시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7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만 보더라도 의회에서 217대 215, 2표 차로 간신히 비준안이 통과되는 등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의 지지는 아슬아슬한 수준이다.

부시 행정부의 인기 하락과 보호무역주의의 득세로 미국 협상단은 한국에 양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음을 보여줘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나서서 의회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여론 지도자들에게 한·미 FTA가 얼마나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도움을 줄 것인지를 피부로 느끼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공백도 또 하나의 변수다. 그는 10여 년 이상 의원으로 재직하며 공화·민주당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런 그가 물러난 것은 미 정부의 대의회 지지 확보를 매우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 신임 대표인 수전 슈워브가 잘 알려진 통상 전문가이긴 하지만 포트먼과 같은 정치적 영향력은 없다. 앞으로 한·미 FTA의 논의 과정에서 미국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는 더욱 많은 간섭을 어떻게 극복해낼지가 주목된다. (김석한 미 워싱턴 애킨젠프 법률회사 매니징 파트너)  
(2006년 5월 12일자 중앙일보 시론)

### 〈저출산 쇼크〉 경제활성화가 해법이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대한 아파트 숲을 만나게 된다. 분당과

용인의 아파트들이다. 이 아파트 숲을 볼 때마다 20~30년 후 모습이 궁금해진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먼저 요즘 서울 강남의 재건축처럼 새로운 첨단아파트가 건립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많은 아파트들이 흉물스러울 정도로 낡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초대형 슬럼지역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평생 모은 자산의 80% 이상을 아파트 한 채에 쏟아붓는 한국가구의 자산구조로 볼 때 이 판단은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발표된 출산통계는 하나의 큰 힌트를 제공한다. 2005년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약 10년 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부터 통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 일곱 명 중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고, 실제로 거리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인들일 것이다.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된다면 분당아파트의 슬럼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정부는 출산을 저하를 막기 위해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젊은 세대

들의 자녀에 대한 인식변화와 과도한 양육비용이 지목되고 있다. 정부대책도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분석은 언뜻 보면 설명력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 미혼 남녀의 80% 이상이 자녀를 갖고 싶어한다는 통계를 보면 최근 들어 젊은 세대들이 갑자기 자녀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양육비와 사교육비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문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관점도 설명력이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급격한 출산을 저하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학에서는 정상재(正常財)와 열등재(劣等財)를 구분한다.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를 정상재라고 하고, 감소하는 경우를 열등재라고 한다.

2004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미국이 2.05명, 프랑스는 1.90명, 영국이 1.74명이다.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의 합계출산율이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자식도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에 속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즉 소득이 늘어나거나, 늘어날 전망이 있다면 출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녀가 정상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출산을 저하는 경제주체들이 향후의 소득창출 및 소득증대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처럼 빠른 속도의 소득증대 및 장기적인 소득안정성이 기대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19조3000억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6월 중에 발표되는 대책에서는 추가적인 재원투입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줄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데 정부가 몇 푼 더 준다고, 사람들이 자녀들을 더 많이 낳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라기보다 차라리 상상에 가깝다.

효과가 입증된 일부 사업에만 제한된 재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막대한 재원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출산을 저하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야 분당 사람들도 20~30년 후 문제 때문에 오늘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경제 활성화이고, 성장 잠재력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  
(2006년 5월 11일자 조선일보 시론)

## 저출산의 사회학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여성들 사이의 계층 분화도 뚜렷해진다. 가로축과 좌우를 '전업주부 지향'과 '직업 지향'으로 놓고, 세로축을 '높은 지위 지향'과 '현상태 지향'으로 잡아 교차시키면 다섯 가지 유형의 여성집단이 드러난다. (<하류사회>, 미우라 아쓰시 지음) 일본 얘기지만 우리도 다를 바 없다.

제1 유형은 높은 지위와 전업주부를 지향하는 집단이다. 웬만큼 사는 집의 여성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집안의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2 유형은 높은 지위와 직업을 함께 지향하는 유형으로, 대개 고학력 맞벌이 부부를 이룬다.

제3 유형은 그렇게 고학력은 아니지만 나름의 전문기술이나 재능을 지닌 여성들이다. 사회적 지위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은 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제4 유형은 학력과 기술 수준이 달려 지위 상승을 꿈꾸기가 어렵다.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어서 결혼해 정착하기를 바란다. 마지막 유형은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전통적인 여사무원들이다. 앞의 넷을 모두 약간씩 섞어놓은 듯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이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으로 떨어졌다. 지구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본격적인 한 자녀 시대를 맞은 셈이다. 누가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

1유형은 별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아이를 못 낳을 수는 있어도 안 낳지는 않는다. 대개 둘 이상을 둔다. 2유형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으나 자신의 선택을 우선한다. 결혼해 아이를 두지 않으면 딩크족, 아이를 낳으면 여피족이 된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인데 사회가 왜 개입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주로 이들이다.

3유형은 다수가 출산을 바란다. 하지만 생활이 바쁘고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해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다. 음악·만화·연극 등 문화 산업과 패션·미용 등 신흥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다. 4유형은 보통 아이를 낳은 뒤 양육을 걱정한다. 수입이 적고 여건도 불안정해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5유형은 갈수록 가변성이 커지고 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기꺼이 아기를 갖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설인다. 앞뒤 재다가 혼기를 놓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출산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집단이 이 유형과 3유형이다.

출산과 양육은 고등 동물의 본능이자 특권이다. 수십억년에 걸친 생명체 진화 과정의 정점에 출산

과 양육이 있다. 부모가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동물은 사실상 포유류와 조류뿐으로, 전체 동물의 1%가 채 안 된다.

양육이란 힘든 일이다. 어버이 박새는 평균 40초에 한 번꼴로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남극대륙의 펭귄은 새끼에게 줄 먹이를 구하려고 서너달이 걸리는 먼길을 오간다. 그런데 동물들도 양육을 포기할 때가 있다.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놓이거나 먹이가 고갈되는 등 환경이 아주 열악해진 경우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저출산의 사회학은 다양한 유형의 삶이 출산·양육과 왜 어긋나는지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 2유형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고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수는 아직 많지 않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미혼여성의 81.9%와 미혼남성의 85.9%가 '2명 이상 자녀를 낳고 싶다'고 답했다. 이들이 순조롭게 가족을 이뤄 큰 스트레스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출산 장려책이다.

(2006년 5월 11일자 한겨레신문 김지석칼럼)

## 미국이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이유

현대자동차 정몽구가(家)의 경영권 편법 승계가 된서리를 맞아 재계는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부(富)의 승계는 빈부 차이를 항구화시킨다면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 미국의 거부(巨富)들이 상속세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한국의 거부들은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왜 미국이 한 세기 만에 상속세 제도를 아예 폐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에선 상속세를 '사망세(死亡稅)'라고 부른다. 지난 2000년 공화당이 발의한 '사망세 폐지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조지 부시는 상속세의 완전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 상속세율을 점진적으로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상속세 완전폐지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로 지연되었는데, 작년엔 하원이 '사망세 영구 폐지법(안)'을 다시 통과시켜서 현재 이 법안은 상원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사망세는

죽음이라는 비극적 순간에 정부가 돈을 거두어가는 반(反)윤리적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사망세는 기업, 농장 등 가업(家業)의 승계를 불가능하게 하고, 살아 있을 때 흥청망청 쓰고 죽는 풍조를 조성하며, 노인들이 뒤늦게 재혼하도록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미 세금을 낸 후에 남겨 놓은 재산에 대해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난도 있다.

상속세는 부유층의 부(富)의 계승을 차단해서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정작 상속세를 낼 사람들은 변호사를 동원해서 절세 대책을 강구하기 마련이다. 사고나 급환으로 별안간 사망한 사람의 자식들이 세금 벼락을 맞는 것은 그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가장 불행한 순간에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반면에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재단을 만들거나 세금이 적은 외국에 신탁계정을 만들어 세금망(網)을 빠져나간다. 조지 소로스와 에드워드 케네디가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이미 처리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상속세를 내지 못해 매물로 나온 기업을 사들여서 돈을 벌기 때문에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가업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악몽(惡夢)이다. 상속세를 걱정해서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세 때문에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상속세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벌을 과하는 측면이 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의 갈로 가(家)를 보자. 갈로 형제는 금주법으로 파산한 끝에 자살한 아버지가 남긴 폐허 같은 양조장을 인수해서 굴지의 와인 회사로 키워냈다. 오늘날 이 회사는 창업주의 손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늘려온 이들에게 고율의 상속세를 물려 경영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속세가 소수 부유층에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다. 경제규모가 커진 데 비해 상속세 면세점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선대(先代)가 일으킨 사업체를 팔고 멀쩡히 살아온 집마저 내놓기도 한다. 정부가 상속세를 거두어 간다 해도 정부는 돈을 헛되게 쓰는 경향이 있어 국가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해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상속세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캐나다, 호주, 중국, 멕시코, 스웨덴, 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두고 있지 않거나 폐지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교수)  
〈2006년 5월 9일자 조선일보 시론〉

### 환율 급락에 어떻게 대처할까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달러당 950원도 속절없이 무너졌고, 어제는 934원대로 떨어졌다. 사실 원-달러 환율은 이번에 급락하기 이전에도 주요 아시아권 통화의 환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낙관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비교적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는 외국인들에게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다. 환율 하락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쏠림현상'이다. 일부 투기세력이 역외 선물환(NDF) 시장을 통해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서고, 여기에 일부 수출호황 업종

의 기업이 편승해 선물환 매도를 쏟아내면서 환율 급락세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그 피해는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쏠림현상이 일종의 시장 실패라고 본다면 정책 당국이 필요한 경우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에서 정책 당국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쏠림을 증폭시킨 경우가 빈번했던 경험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침 정책 당국이 직접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점은 다행스럽다. 물론 급격한 환율 하락과 같은 비상사태에는 완급 조절을 위한 개입이 불가피하겠지만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른 일시적 환율 변동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차후에 환율 변동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 정책 당국은 그보다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은 시장 규모가 작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외환거래 가운데 국경 간 거래 비중이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인 63%를 훨씬 밑도는 25%에 불과하다. 따라서 환율 급변동을 완

화하기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화 등을 포함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외환시장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환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외환의 초과공급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몰리는 과다한 달러 공급을 해외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자면 외환 규제를 더 풀고, 해외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피해가 큰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과 환변동보험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충격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환율 변동폭이 커질수록 금융회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금융회사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환위험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특정한 환율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그 이하로 하락할 때 달러를 투매하는 행태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수 있다. 환율이 반등할 경우에는 손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방어할

주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환율 변동의 위험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환율 움직임에는 양방향 리스크가 있고 환위험을 회피하는 데는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환율은 그 속성상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변동성도 크다. 이제는 환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해도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최홍식 한국금융연구원장)  
 〈2006년 5월 4일자 중앙일보 시론〉

### 보유세든 양도세든 한쪽은 대폭 낮춰야 한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871만 채의 공시가격이 평균 16.4% 올랐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용인시 등의 아파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고 200%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도 16만 가구에 육박한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도 크게 늘어 주택 소유자들은 이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사도 가지 말고 세금이나 죽어라고 내라는 거냐'는 불만들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원칙으로 내세워 재산세 과표를 면적에서 가격으로 바꾸고 시세반영비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서울 강남 I아파트 59평형의 보유세는 지난해 654만원에서 올해 1787만원으로 173% 늘어난다. 분당 S아파트 48평형은 119% 증가한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도 세금 부담이 계속 무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거래세를 낮춘다는 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거래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D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4개 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003년 6만4354건에서 2004년 4만3000건, 2005년 3만5000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40평형대 아파트를 팔아 세금을 내고 나면 30평형대 아파트를 살 돈밖에 남지 않으니 누가 집을 내놓겠는가. 이사업체 파파이사 김갑승 실장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전 하루 340건꼴이던 이사 건수가 대책 발표 후 150~200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중(重)과세가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위협하는 셈이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동시 강화는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폭등시키고 있다. 조세개혁 전문가 사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율을 크게 올리면서 양도세를 증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목표가 집값 안정이라면 보유세든 양도세든 한쪽은 대폭 낮춰야 한다.

(〈2006년 4월 29일자 동아일보 사설〉)

## 2006년 5월호 통권 제119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위원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월간재정포럼 / 2006년 5월 15일 발행 / 제11권 제5호(통권 제119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TEL : (02)2186-2133 FAX : (02)2186-2139

E-mail : pub@kipf.re.kr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